

Vol.1548



법원공보

2018. 7. 15. SUN

법원행정처

● 목 차

규칙	897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899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일부개정규칙
	917	법원조사관 등 규칙 일부개정규칙
내규	919	법원행정처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전부개정내규
	933	대법원 위임전결사항내규 일부개정내규
	942	각급 기관 및 직위의 영문표기에 관한 내규 일부개정내규
예규	947	수신자기호 부여예규 일부개정예규
신법령 목록	951	
인사	955	
공지사항	963	

● 규 칙

◎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794호 2018. 6. 28. 공포)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춘천지방법원 소재지에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인천지방법원 소재지와 춘천지방법원 소재지에 각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판사무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의 개정 규정에 의하여 서울고등법원 인천 원외재판부가 재판할 사건으로서 2019년 2월 28일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이 재판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고등법원 원외재판부의 설치) 제주지방법원 소재지와 전주지방법원 소재지에 각 광주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청주지방법원 소재지에 대전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u>춘천지방법원 소재지에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u>를, 창원지방법원 소재지에 부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각각 둔다.</p>	<p>제2조(고등법원 원외재판부의 설치)----- ----- ----- ----- 인천 <u>지방법원 소재지와 춘천지방법원 소재지에</u> <u>각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u>----- ----- -----</p>

◎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795호 2018. 6. 28. 공포)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7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 및 법 제74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을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당,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환수 및 법 제74조의3제1항에 따른 수당”으로 한다.

제2조 중 “「국가공무원법」을 “법”으로, “법 제7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을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당”으로, “특수경력직공무원중 법 제74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공무원 등”을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법 제74조의3제1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일반직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라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이하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청원경찰로 20년이상 근속한 자로서 정년퇴직일전 1년이상 기간중 자진퇴직하는 자로”를 “일반직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청원경찰로서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퇴직일부터 최소한 1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사람으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다른 법령에 의하여”를 “다른 법령에 따라”로,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정년퇴직일전”을 “정년퇴직일 전”으로 한다.

④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는 사람

나. 감사원 등 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징계처분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다.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라.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

2.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3.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 중 또는 수사 중인 사람

4. 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경력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특

수경력직공무원 중 정무직공무원(선거로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사람

제4조 본문 중 “별표 1에 의하여”를 “별표 1에 따라”로 한다.

제5조제1항 단서 중 “명예퇴직 수당”을 “명예퇴직수당”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제5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기간내에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명예퇴직원을 첨부하여 이를”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 내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명예퇴직원을 첨부하여”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신청기간내에”를 “신청기간 내에”로, “이를 법원행정처장”을 “법원행정처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항의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명예퇴직 희망일부터 최소한 15일 이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이 아니어도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법원행정처장은 인사운영상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15일의 기간을 줄일 수 있다.

1.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거나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된 사람이 재임용된 특수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하는 경우
2. 공무원 신분의 단절 없이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에서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이 임기제공무원을 퇴직하는 경우
3. 직제와 정원의 개폐,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결정) ① 법원행정처장은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받으면 신청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제6조 제2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예산 등을 고려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후에 사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기 전에 감사원 등 감사기관, 검찰청, 경찰청 및 공무원연금공단 등에 제3조제4항에 따른 지급제한대상 해당 여부와 근속기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법관의 경우에는 진행 중인 재판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확인한다.

③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되 법관, 일반직공무원 간의 균형을 감안하여야 한다.

1. 상위직 공무원
2. 장기 근속 공무원

제7조의2의 제목“(특수경력직공무원 등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 등의 명예퇴직수당지급의 특례)”을“(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등의 명예퇴직수당지급의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각 호”를 “각 호의”로, “각 호”를 “다음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각 호”를 “각 호의 구분”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자가”를 각각 “사람이”로 한다.

-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을 한 사람이 제3조제4항에 따른 지급제한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통지) 법원행정처장은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즉시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제7조제1항 후단의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상속할 권리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의 취소 등) 법원행정처장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이후부터 명예퇴직일까지의 기간 중에 제3조제4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법원규칙이”를 “대통령령등으로”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를 “(선거로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9조의3제1항 중 “각호”를 “각 호”로, “별표 2와 같다”를 “별표 2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자가”를 “사람이”로, “정년 잔여기간”을 “정년잔여기간”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9조의4, 제9조의5,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의4(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및 정산 절차 등)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각급 기관의 장(이하 “지급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제1호의2·제1호의3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명예퇴직수당 환수고지서(이하 “환수고지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하며, 환수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환수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법 제74조의2제4항에 따른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환수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환수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고지된 환수금

에 이자를 가산하되, 이자를 계산할 때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한다.

③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선거로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재임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급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재임용되는 사람에게 환수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환수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재임용일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법 제74조의2제4항에 따른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임용일부터 30일을 초과한 기간에 가산할 이자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1. 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공무원: 재임용한 각급 기관의 장
2.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각급 기관의 장
- ④ 제3항에 따라 환수금을 낸 사람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한 각급 기관의 장이 그 공무원의 퇴직일(예산 사정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30일 이내)에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정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⑤ 각급 기관의 장은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라 명예 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을 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무원(선거로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와 그 재임용된 공무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 환수 및 정산 절차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⑥ 법 제74조의2제3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 환수한 각급 기관의 장은 그 환수결과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의5(형벌사실의 확인) 지급기관의 장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제1호의2 및 제1호의3에 해당되는지를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지급액) ①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법관(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 및 16호봉 이상인 법관은 제외한다)·일반직공무원(임기제 공무원은 제외한다)·청원경찰로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사람으로서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스스로 퇴직하는 사람으로 한다.

- ②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별정직공무원(비서관 및 비서는 제외한다)으로 1년 이상 근속한 사람으로서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 그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스스로 퇴직하는 사람으로

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기퇴직수당의 금액과 제2항에 따른 자진퇴직수당의 금액은 퇴직 당시 월 봉급액의 6개월분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정년 또는 근무상한 연령까지의 잔여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정년 잔여기간의 계산은 제3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일 현재 제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진퇴직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이 규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또는 명예퇴직수당 정산금 지급대상인 사람
2. 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 가.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는 사람
 - 나. 감사원 등 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징계처분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 다.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 라. 징계처분 중에 있는 사람

3. 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일 현재 제3조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제11조(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신청 등) ①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이하 “조기퇴직수당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조기퇴직수당 등 지급신청서에 조기퇴직원 또는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이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에 따라 조기퇴직수당등 지급신청서를 받으면 1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 즉시 그 결과를 소속 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법원행정처장은 제2항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감사원 등 감사기관, 검찰청, 경찰청 및 공무원연금공단 등에 제10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지급제한대상 해당 여부와 근속기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법관의 경우에는 진행 중인 재판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확인한다.

제12조 중 “조기퇴직수당등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지급의 절차, 기타이 규칙”을 “조기퇴직수당등의 지급대상자 결정 방법, 지급 방법, 그 밖에 이 규칙”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징계처분이 요구되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정산에 관한 적용례) 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이 규칙 시행 전에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되어 이 규칙 시행 후 퇴직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한 기관의 장이 명예퇴직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 및 법 제74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대상과 그 절차 등에 관하여 법 제74조의2 제5항 및 제74조의3 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적용범위)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의 경력직공무원에 대한 법 제7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이하 "조기퇴직수당"이라 한다)과 법 제2조 제3항의 특수경력직 공무원중 법 제74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공무원 등의 자진퇴직에 따른 수당(이하 "자진퇴직수당"이라 한다)의 지급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p> <p>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법관(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 및 16호봉 이상인 법관은 제외한다)·일반직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라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이하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청원경찰로 20년이상 근속한 자로서 정년퇴직일전 1년이상의 기간중 자진퇴직하는 자로 한다.</p>	<p>제1조(목적)-----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당,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환수 및 법 제74조의3제1항에 따른 수당-----</p> <p>-----</p> <p>-----</p> <p>-----</p> <p>제2조(적용범위) 법-----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당-----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법 제74조의3제1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p> <p>-----</p> <p>-----</p> <p>-----</p> <p>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p> <p>① ----- 사람은----- 일반직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청원경찰로서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퇴직일부터 최소한 1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사람으로-----</p>

현 행

다만, 이 규칙이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이에 같은하는 공로퇴직수당·명예전역수당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이미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이를 제외한다.

② (생 략)

③ 제1항의 근속연수는 퇴직 당시 해당 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④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에서 이를 제외한다.

1. 징계처분 요구중인 자, 징계 의결 요구 중인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임용 제한 기간중에 있는자
2.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
3. 감사원 등 감사기관에서 비위 조사 중이거나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인 자
4. 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력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특수경력직중 정무직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

개 정 안

----- 다른 법령에 따라

----- 사람은
----- .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④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는 사람
 - 나. 감사원 등 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징계처분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 다.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 라.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
2.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3.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 중 또는 수사 중인 사람

현 행

⑤ 정년잔여기간의 계산은 법관의 경우에는 정년퇴직일전에 임기만료일이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을 정년퇴직일로 본다. 다만, 법관의 경우 그 기간은 7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1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법관의 경우 월봉급액은 13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① 법원행정처장은 매년 2회 이상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인원·신청기간·지급방법·지급일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늦어도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개시일 20일 전까지 그 내용을 각급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관의 경우에는 인력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매년 상반기 1회에 한하여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6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제5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기간 내에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명예퇴직원을 첨부하여 이를 소속기관의 장을

개 정 안

4. 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경력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정무직공무원(선거로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사람

⑤ -----
정년퇴직일 전-----

제4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 -----
----- 별표 1에 따라-----

제5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① -----

----- 명예퇴직수당-----

② (현행과 같음)

제6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

① -----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 내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명예퇴직원을 첨부하여-----

현행

거처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법원행정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제3조 제1항의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명예퇴직 희망일부터 최소한 15일 이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신청기간이 아닌 때에도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법원행정처장은 인사운영상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5일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제7조의2 제1항에 따라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거나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된 자가 재임용된 특수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하는 경우 또는 공무원 신분의 단절 없이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에서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이 임기제공무원을 퇴직하는 경우
2. 직제와 정원의 개폐,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

제7조(명예퇴직수당지급의 심사·결정) ① 법원행정처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신청기간 경과후 30일 이내(제6조 제2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개정안

----- 신청기간내에 -----
법원행정처장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항의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명예퇴직 희망일부터 최소한 15일 이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이 아니어도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법원행정처장은 인사운영상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15일의 기간을 줄일 수 있다.

1.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거나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된 사람이 재임용된 특수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하는 경우
2. 공무원 신분의 단절 없이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에서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이 임기제공무원을 퇴직하는 경우
3. 직제와 정원의 개폐,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

제7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결정) ① 법원행정처장은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받으면 신청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제6조제2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예산

현 행

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예산 등을 고려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정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 법관, 일반직공무원 간의 균형을 감안하여야 한다.

- 1. 상위직공무원
- 2. 장기근속공무원

제7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 등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 등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의 특례)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직을 퇴직할 때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소속기관이 폐지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 정 안

등을 고려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후에 사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기 전에 감사원 등 감사기관, 검찰청, 경찰청 및 공무원연금공단 등에 제3조제4항에 따른 지급제한대상 해당 여부와 근속기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법관의 경우에는 진행 중인 재판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확인한다.

③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되 법관, 일반직공무원 간의 균형을 감안하여야 한다.

- 1. 상위직 공무원
- 2. 장기 근속 공무원

제7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 등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의 특례) ① -----

----- 각 호의 -----

----- 다음 각 호 -----

현 행

제9조(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 결정의 취소 등) 법원행정처장은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게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 이후부터 명예퇴직일까지의 기간중에 제3조 제4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명예퇴직수당지급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9조의2(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 공무원) 법 제74조의2 제3항 제2호에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공무원”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공무원을 말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직공무원
2. 법 제2조 제3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

제9조의3(명예퇴직수당의 환수금 및 정산금) ① 법 제74조의2 제3항 각호의 사유로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의 환수금의 산정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② 법 제74조의2 제3항 제2호 의 사유로 제1항의 환수금을 납부한 자가 재임용된 후 근무한 기간이 환수금의 산정 대상기간(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정년 잔여기간에서 명예퇴직한 날부터 재임용일까지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보다 짧은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정무직공무원으로 퇴직하는 자에게는 정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 정 안

제9조(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의 취소 등) 법원행정처장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이후부터 명예퇴직일까지의 기간 중에 제3조제4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9조의2(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 공무원) --- 대통령령등으로 --- 각 호 ---

1. --- 제2조제2항에 따른 ---
2. --- (선거로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제9조의3(명예퇴직수당의 환수금 및 정산금) ① --- 각 호 --- 별표 2에 따른다.

- ② --- 사람이 --- 정년 잔여기간 --- , --- 사람 ---

현 행

제9조의4(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및 정산지급 절차 등)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각급기관의 장(이하 "지급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법 제74조의2 제3항제1호·제1호의2·제1호의3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명예퇴직수당환수고지서(이하 "환수고지서"라 한다)를 발부하여야 하며, 환수고지서를 받은 자가 환수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74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고지서를 받은 자가 환수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지된 환수금에 이자를 가산하되, 이자의 계산에 있어서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한다.

③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를 법 제74조의2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하고자 하는 각급기관의 장은 재임용되는 자에게 지체 없이 환수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환수고지서를 받은 자가 재임용일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법 제74조의2 제4항에 따른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임용일부터 30일을 초과한 기간에 가산할 이자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개 정 안

제9조의4(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및 정산 절차 등)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각급기관의 장(이하 "지급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제1호의2·제1호의3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명예퇴직수당 환수고지서(이하 "환수고지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하며, 환수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환수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법 제74조의2제4항에 따른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환수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환수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고지된 환수금에 이자를 가산하되, 이자를 계산할 때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한다.

③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선거로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재임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급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재임용되는 사람에게 환수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환수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재임용일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법 제74조의2제4항에 따른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임용일부터 30일을 초과한 기간에 가산할 이자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현행

- ④ 제3항에 따라 환수금을 납부한 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을 재임용한 각급기관의 장이 해당 공무원의 퇴직일(예산 사정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30일 이내)에 제9조의3 제2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정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⑤ 법 제74조의2 제3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 환수한 각급기관의 장은 그 환수결과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의5(형벌사실의 확인) 지급기관의 장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법 제74조의2 제3항제1호·제1호의2·제1호의3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매년 6월 말일과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안

1. 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공무원: 재임용한 각급 기관의 장
 2.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각급 기관의 장
- ④ 제3항에 따라 환수금을 낸 사람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한 각급 기관의 장이 그 공무원의 퇴직일(예산 사정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30일 이내)에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정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⑤ 각급 기관의 장은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을 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무원(선거로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와 그 재임용된 공무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 환수 및 정산 절차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⑥ 법 제74조의2제3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 환수한 각급 기관의 장은 그 환수결과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의5(형벌사실의 확인) 지급기관의 장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제1호의2 및 제1호의3에 해당되는지를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현행

제10조(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 지급액) ①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법관(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 및 16호봉 이상인 법관은 제외한다)·일반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자로서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 그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자로 한다.

②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별정직공무원(비서관·비서를 제외 한다)으로 1년이상 근속한 자로서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 그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자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기퇴직수당액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진퇴직수당액은 퇴직당시 월봉금액의 6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까지의 잔여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정년잔여기간의 계산은 제3조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일 현재 제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안

제10조(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지급액) ①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법관(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 및 16호봉 이상인 법관은 제외한다)·일반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청원경찰로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사람으로서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 스스로 퇴직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별정직공무원(비서관 및 비서는 제외 한다)으로 1년 이상 근속한 사람으로서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 그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스스로 퇴직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기퇴직수당의 금액과 제2항에 따른 자진퇴직수당의 금액은 퇴직당시 월봉금액의 6개월분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까지의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정년잔여기간의 계산은 제3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일 현재 제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현행

- 1. 이 규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또는 명예퇴직수당 정산금 지급 대상인 자
- 2. 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일 현재 징계처분 요구 중이거나 징계의결 요구 중 또는 징계처분 중에 있는 자

- 3. 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일 현재 제3조 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제11조(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신청 등) ①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이하 "조기퇴직수당등"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조기퇴직수당등지급신청서에 조기퇴직원 또는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이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결정 즉시 그 결과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안

- 1. 이 규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또는 명예퇴직수당 정산금 지급 대상인 사람
- 2. 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는 사람
 - 나. 감사원 등 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징계처분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 다.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 라. 징계처분 중에 있는 사람

- 3. 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일 현재 제3조 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제11조(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신청 등) ①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이하 "조기퇴직수당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조기퇴직수당등 지급신청서에 조기퇴직원 또는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이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에 따라 조기퇴직수당등 지급신청서를 받으면 1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 즉시 그 결과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현 행

제12조(시행세칙)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등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지급의 절차, 기타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개 정 안

③ 법원행정처장은 제2항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감사원 등 감사기관, 검찰청, 경찰청 및 공무원연금공단 등에 제10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지급제한대상 해당 여부와 근속기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법관의 경우에는 진행 중인 재판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확인한다.

제12조(시행세칙) ----- 조기퇴직수당등의 지급대상자 결정 방법, 지급 방법, 그 밖에 이 규칙 -----
----- .

◎ 법원조사관 등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796호 2018. 6. 28. 공포)

법원조사관 등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1(법률조사관) ① 대법원에 법률조사관을 둘 수 있다.

② 법률조사관은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법률조사관은 법관인 재판연구관의 명을 받아 민사, 형사, 행정 사건의 심판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조사하고, 그 밖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제2조의1(법률조사관) ① 대법원에 법률조사관을 둘 수 있다.</p> <p>② 법률조사관은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p> <p>③ 법률조사관은 법관인 재판연구관의 명을 받아 민사, 형사, 행정사건의 심판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조사하고, 그 밖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p>

● 내 규

◎ 법원행정처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전부개정내규

(법원행정처내규 제85호 2018. 6. 29. 결재)

법원행정처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원행정처 성희롱·성폭력 및 성차별행위의 예방과 처리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9조,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법원행정처의 성희롱·성폭력 및 성차별행위의 예방과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법원행정처 소속의 법관 및 직원(법원행정처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되, 법원행정처에서 상시 또는 일시 근무하거나 법원행정처와 업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이하 “근무자”라 한다)이 피해자인 성희롱·성폭력 및 성차별행위(이하 “성희롱 등”이라 한다)를 포함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성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혼인, 임신 또는 출산 등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법원행정처장의 책무) ① 법원행정처장은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성폭력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엄정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 천명
2.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조치
3. 소속 법관 및 직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및 홍보의 실시
4.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의 설치 및 운영
5.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절차의 마련
6. 성희롱·성폭력 예방 관련 예산의 확보 등

②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반 조치 시행을 위하여 매년 성희롱·성폭력 방지

조치에 관한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③ 법원행정처장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9조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 등 성차별 금지를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고충상담창구 및 양성평등지원관) ①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 및 직원, 근무자의 성희롱 등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과 처리를 위하여 성희롱 등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설치한다.

- ② 고충상담창구의 업무와 성희롱 등 방지를 위한 제반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 직원 및 외부전문가 중에서 양성평등지원관을 지정 또는 위촉하되, 남성 및 여성 각 1명 이상을 포함한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 2명 이상과 남성 및 여성 각 1명 이상을 포함한 법원행정처 소속 직원 2명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③ 법관 양성평등지원관은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들의 추천을 받아, 직원 양성평등지원관은 법원행정처 소속 직원들의 추천을 받아 각 지정한다.
- ④ 외부전문가 양성평등지원관은 성희롱 등 방지 관련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
- ⑤ 양성평등지원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 등 관련 고충의 접수 및 이에 대한 상담·조언
2. 성희롱 등 관련 사건의 조사 및 처리
3. 성희롱 등 관련 사건의 처리에 관한 부서 간 협의·조정
4. 성희롱 등 관련 사건의 피해 구제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 등의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및 그 밖의 성희롱 등의 예방 업무

- ⑥ 법원행정처장은 양성평등지원관의 성희롱 등 방지 관련 업무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 교육을 수강하도록 할 수 있다.

- ⑦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성희롱·성폭력·성차별행위 사건 처리절차 안내, 별지 제2호 서식의 성희롱·성폭력·성차별행위 고충신고서 및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① 법원행정처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②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관한 법령
2.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

4.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
 6.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등
- ③ 신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④ 법원행정처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효과 제고를 위하여 관리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⑤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 참석자 명단, 교육 내용 등에 관한 실시 결과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성희롱 등 관련 고충의 상담) ① 성희롱 등 관련 고충이 있는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과 직원, 근무자는 서면, 전화, 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양성평등지원관에게 상담을 신청할 수 있고, 상담 대상은 상담 신청인 본인이 입은 성희롱 등 피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 ② 양성평등지원관은 제1항의 상담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고, 조사 신청 등의 처리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8조(성희롱 등 관련 사건의 조사) ① 성희롱 등 관련 사건의 조사를 원하는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과 직원, 근무자는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양성평등지원관에게 조사를 신청할 수 있고, 양성평등지원관은 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조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 대상이 조사 신청인 본인이 입은 성희롱 등 피해가 아닌 경우 조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상당한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② 양성평등지원관은 성희롱 등 사건의 조사를 위하여 피해자와 행위자, 조사 신청인, 그 밖의 사건관계인을 면담할 수 있다.
- ③ 양성평등지원관은 성희롱 등 관련 사건의 조사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양성평등지원관은 조사 신청을 접수한 성희롱 등 관련 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가 있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조사를 유예하거나,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1.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 중인 경우
 2. 조사 신청인이 그 신청을 취소한 경우(피해자가 조사를 원하는 경우는 제외)
 3.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 ⑤ 양성평등지원관은 조사 과정에서 성희롱 등 관련 사건과 관계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협조를 요청받은 부서는 이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또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조사 과정에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 ⑥ 양성평등지원관은 피해자를 조사할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조사 시간과 장소 등을 정하는 등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 ⑦ 양성평등지원관은 조사의 진행 상황을 피해자에게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 ⑧ 양성평등지원관은 조사 과정에서 성희롱 등 관련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나 조사 신청인, 그 밖의 사건관계인을 회유, 협박하거나 사실을 은폐하는 등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알게 된 때에는 이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① 법원행정처장(인사·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법원행정처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성희롱 등의 피해자·상담 또는 조사 신청인과 조사에 협력하는 사람에 대하여 상담, 조사 신청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법원행정처장은 성희롱 등 관련 사건의 원활한 조사, 피해자의 인격권·근로권의 보호, 2차 피해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와 행위자의 사무분담 조정
2. 피해자와 행위자의 업무 공간 분리
3. 피해자에 대한 치료 지원
4. 피해자에 대한 법률서비스 지원 등

- ③ 성희롱 등의 피해자 또는 양성평등지원관은 법원행정처장에게 제2항 각 호의 조치를 하여 줄 것을 건의할 수 있다.

- ④ 양성평등지원관 등 성희롱 등 관련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사람은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의 신원과 사안의 내용 등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성희롱 등 행위로 인한 징계처분 또는 인사발령 등 사항을 관보 또는 법원공보에 게재하는 경우,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소속, 보직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사항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피해구제방안의 제시 및 이행) ① 양성평등지원관은 피해자의 신청이 있거나, 피해자의 이익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 행위자에게 사과 또는 재발 방지 약속 등 적절한 피해구제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서 제시한 피해구제방안에 대하여 피해자와 행위자가 모두 동의하고 행위자가 그 이행을 완료한 경우 양성평등지원관은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제11조(조사결과와 보고 등) ① 양성평등지원관은 성희롱 등 관련 사건의 조사를 완료하면 지체

없이 그 조사결과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고, 피해자와 행위자에게 조사가 완료되었다는 취지와 조사결과와 주요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성희롱 등 관련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2조에 따른 양성평등심의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부의할 수 있다.

③ 피해자와 행위자는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때로부터 2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법원행정처장에게 제12조에 따른 양성평등심의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부의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제12조(양성평등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성희롱 등 관련 사건의 처리, 성희롱 등 방지를 위한 정책과 관련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양성평등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윤리감사관이 되고, 위원장이 아닌 위원은 법관, 직원 또는 외부전문가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원 중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원 중 2명 이상을 외부전문가로 위촉한다.

④ 위원장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 법원행정처장은 위원이 질병, 장기부재 등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지명을 해제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고, 간사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법원행정처장의 심의 안건 부의가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한다.

③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 양성평등지원관, 피해자, 행위자, 그 밖의 사건관계인에게 서면 또는 구술에 의한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안건과 관련된 양성평등지원관, 피해자, 행위자 그 밖의 사건관계인은 서면으로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거나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에 관하여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부의된 안건의 행위자 또는 피해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의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해당 위원은 회피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기피 신청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재적위원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제14조(성희롱 등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사건의 종결) 사건의 조사 결과 성희롱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피해자와 행위자에게 통보한 후 사건을 종결한다.

제15조(징계) ① 법원행정처장은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행위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제8조제8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이에 관한 조사와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법원행정처장은 성희롱 등 행위자가 의원면직을 신청하는 경우 「법관의 의원면직에 관한 예규」 및 「비위공무원 및 징계 등 처분기록말소에 관한 인사사무처리예규」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의원면직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6조(재발방지조치 등) ① 법원행정처장은 성희롱 등 관련 사건의 조사 결과 성희롱 등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행위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2가지 이상의 조치를 병행하거나 제15조제1항의 징계절차와 병행할 수 있다.

1. 주의 촉구
2. 성희롱 등 예방교육 수강 권고
3. 심리상담 권고
4. 피해자와 행위자의 사무분담 조정
5. 피해자와 행위자의 업무 공간 분리
6. 그 밖의 성희롱 등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기 전에 피해자와 행위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제16조제1항에 따라 성희롱 등 관련 사건을 처리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피해자와 행위자 등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상담일지) ① 양성평등지원관은 성희롱 등 관련 고충의 상담과 사건의 조사에 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상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 등 관련 고충의 상담에 관한 상담일지는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비실명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의 신청 후에는 실명으로 전환할 수 있다.

③ 양성평등지원관은 법원행정처장의 요구를 받은 경우 또는 지정에서 해제되거나 해촉된 경우,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상담일지를 지체 없이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온라인 신고센터) ① 사법부 전체의 법관 및 직원, 근무자의 성희롱 등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과 처리를 위하여 사법부 전산망을 이용한 그룹웨어(코트넷)에 온라인 신고센터를 설치한다.

② 온라인 신고센터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법관, 직원 및 외부전문가 중에서 온라인 신고센터 양성평등지원관을 지정 또는 위촉하되, 남성 및 여성 각 1명 이상을 포함한 법관 2명

이상과 남성 및 여성 각 1명 이상을 포함한 직원 2명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고, 외부전문가 양성평등지원관은 성희롱 등 방지 관련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 다만, 온라인 신고센터 양성평등지원관은 제5조제2항의 양성평등지원관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③ 온라인 신고센터 양성평등지원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온라인 신고센터를 통한 성희롱 등 관련 고충의 접수 및 이에 대한 상담·조언
 2. 온라인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성희롱 등 관련 사건의 조사 및 처리
 3. 온라인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성희롱 등 관련 사건의 처리에 관한 법원 또는 부서 간 협의·조정
 4. 온라인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성희롱 등 관련 사건의 피해 구제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 등의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및 그 밖의 성희롱 등의 예방 업무
- ④ 온라인 신고센터를 통하여 접수된 성희롱 등 관련 고충의 상담 및 사건의 조사 신청이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 및 직원, 근무자에 관한 것이 아닌 경우, 온라인 신고센터 양성평등지원관은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에 관하여 관계된 기관의 양성평등지원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이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온라인 신고센터를 통하여 접수된 성희롱 등 관련 고충의 상담 및 사건의 조사 신청이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 및 직원, 근무자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제7조부터 제17조까지의 각 규정을 준용한다.
- ⑥ 온라인 신고센터를 통하여 접수된 성희롱 등 관련 고충의 상담 및 사건의 조사 신청이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 및 직원, 근무자에 관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제7조, 제8조, 제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다만, 제3항의 “법원행정처장”은 “관계된 기관의 기관장”으로 본다),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7조의 각 규정을 준용한다.
- ⑦ 법원행정처장은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 및 직원, 근무자에 관한 것이 아닌 성희롱 등 사건의 조사 결과 성희롱 등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그 조사 결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 심의 결과를 포함한다)를 지체 없이 관계된 기관의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행위자 또는 사건관계인이 관계된 기관의 기관장인 경우, 기관장이 제8조제8항의 행위에 관여한 경우, 그 밖의 기관장에게 통보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윤리감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⑧ 온라인 신고센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온라인 신고센터 성희롱 등 사건 처리절차 안내, 별지 제5호 서식의 온라인 신고센터 성희롱·성폭력·성차별 고충신고서 및 온라인 신고센터의 성희롱·성폭력·성차별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 및 사법부 소속인 모든 기관의 양성평등지원관 명단과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를 게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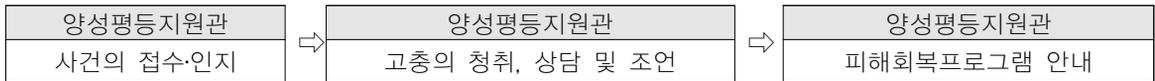
부 칙

이 내규는 2018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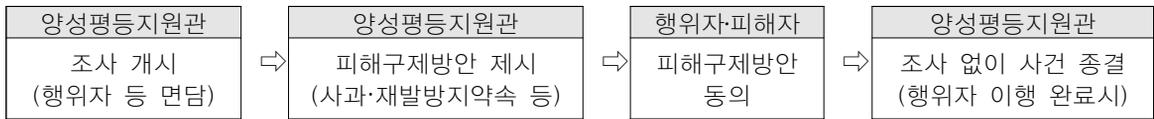
[별지 제1호 서식]

성희롱 등 사건 처리절차 안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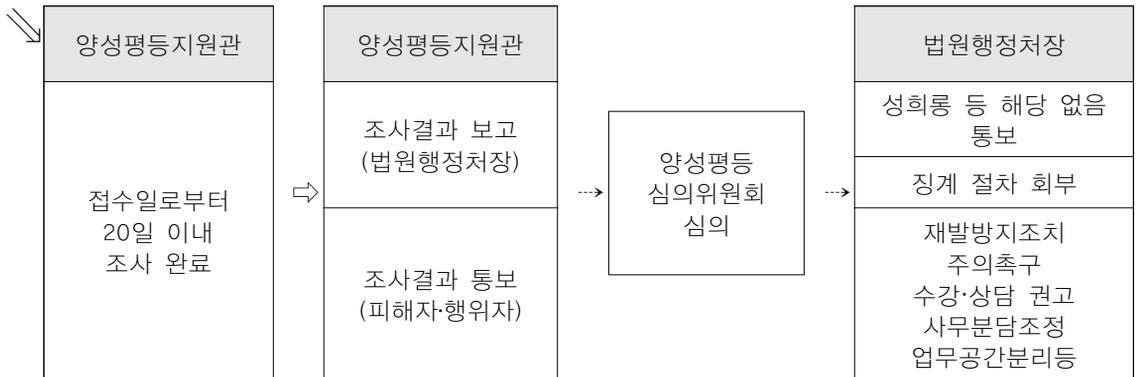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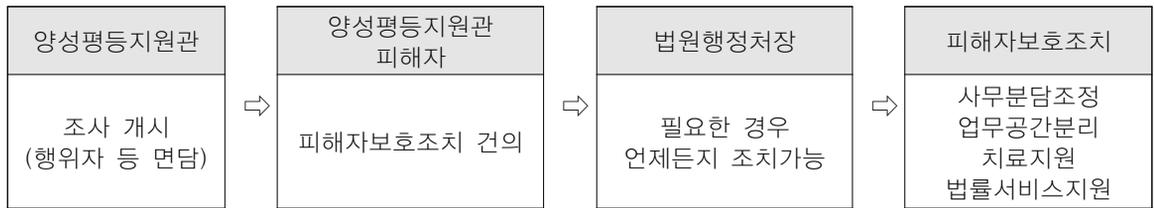
1. 상담 신청 단계(상담만 희망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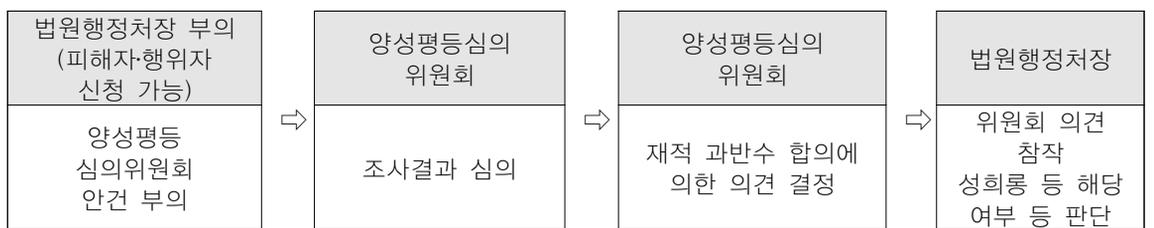
2. 조사 신청 이후 자율적 피해구제 절차



3. 공식적 처리 절차



4. 양성평등심의위원회가 소집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

성희롱·성폭력·성차별 고충 신고서

접수일				상담·조사 및 처리를 원하는 담당자		<input type="checkbox"/> 법원행정처 양성평등지원관 () (원하는 담당자를 특정하여 기재 가능)	
신고인	이름			신고인 연락처	전 화: 이메일:		
	성별						
	소속						
	관계	<input type="checkbox"/> 본인 <input type="checkbox"/> 제3자					
제3자인 경우 신고에 대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피해자	성명			성별			
	직급			소속			
행위자	성명			성별			
	직급			소속			
사건발생시기							
사건발생장소							
사건유형		<input type="checkbox"/> 성폭력 <input type="checkbox"/> 성희롱 <input type="checkbox"/> 성차별 <input type="checkbox"/> 기타()					
사건 개요		• 사건 발생 경위, 상황, 성희롱 등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는 구체적인 내용, 지속반복 여부, 목격자 등 참고인 유무 등을 기록합니다(파일첨부 가능).					
피해자가 원하는 조치 (모든 항목 복수선택 가능, 절차진행 중 변경 가능)	<input type="checkbox"/> 상담만 희망		<input type="checkbox"/> 상담 및 조언 <input type="checkbox"/> 피해회복 프로그램				
	<input type="checkbox"/> 조사 신청 희망		<input type="checkbox"/> 피해자 보호조치 <input type="checkbox"/> 사무분담조정 <input type="checkbox"/> 업무공간분리 <input type="checkbox"/> 치료지원 <input type="checkbox"/> 법률서비스지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				
	<input type="checkbox"/> 자율적 처리 희망 <input type="checkbox"/> 자율적 처리 불희망		<input type="checkbox"/> 사과 <input type="checkbox"/> 재발방지약속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양성평등심의위원회 소집 요구		<input type="checkbox"/> 행위자에 대한 징계 <input type="checkbox"/> 재발방지조치 <input type="checkbox"/> 주의 촉구 <input type="checkbox"/> 성희롱 등 예방교육 수강 권고 <input type="checkbox"/> 심리상담 권고 <input type="checkbox"/> 피해자와 행위자의 사무분담 조정 <input type="checkbox"/> 피해자와 행위자의 업무공간 분리 <input type="checkbox"/> 기타()				

* 신고인과 피해자에 대한 정보는 관련 규정에 의해 비밀이 보장됩니다.

[별지 제3호 서식]

상담 일지

[1면]

양성평등지원관	피해자 실명 여부		<input type="checkbox"/> 실명 <input type="checkbox"/> 비실명(실명확인번호 2018-001) ¹⁾			
고충신고인	성별		소속		직급	
최초 상담 일시	상담방식	<input type="checkbox"/> 전화 <input type="checkbox"/> 온라인 <input type="checkbox"/> 서면 <input type="checkbox"/> 방문()				
피해자와관계	<input type="checkbox"/> 본인 <input type="checkbox"/> 제3자					
	제3자인 경우 신고에 대한 피해자의 동의 여부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확인()					
피해자	성명		성별			
	직급		소속			
행위자	성명		성별			
	직급		소속			
사건발생시기			사건발생장소			
사건유형	<input type="checkbox"/> 성폭력 <input type="checkbox"/> 성희롱 <input type="checkbox"/> 성차별 <input type="checkbox"/> 기타()					
사건 개요 (별지 첨부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 발생 경위, 상황, 성희롱 등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는 구체적인 내용, 지속반복 여부 • 목격자 등 참고인 유무 및 진술 내용, 참고자료의 유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유무, 방식 및 결과 등 • 행위자의 사건 인식 여부, 피해자와 행위자의 업무분장, 관계 등 현황 					
피해자가 원하는 조치 (모든 항목 복수선택 가능, 절차진행 중 변경 가능)	<input type="checkbox"/> 상담만 희망	<input type="checkbox"/> 상담 및 조언 <input type="checkbox"/> 피해회복 프로그램(외부전문가 상담지원등)				
	<input type="checkbox"/> 조사 신청 희망	<input type="checkbox"/> 피해자 보호조치 <input type="checkbox"/> 사무분담조정 <input type="checkbox"/> 업무공간분리 <input type="checkbox"/> 치료지원 <input type="checkbox"/> 법률서비스지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				
	<input type="checkbox"/> 자율적 처리 희망 <input type="checkbox"/> 자율적 처리 불희망	<input type="checkbox"/> 사과 <input type="checkbox"/> 재발 방지 약속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양성평등심의위원회 소집 요구	<input type="checkbox"/> 행위자에 대한 징계 <input type="checkbox"/> 재발방지조치 <input type="checkbox"/> 주의 촉구 <input type="checkbox"/> 성희롱 등 예방교육 수강 권고 <input type="checkbox"/> 심리상담 권고 <input type="checkbox"/> 피해자와 행위자의 사무분담 조정 <input type="checkbox"/> 피해자와 행위자의 업무공간 분리 <input type="checkbox"/> 기타()				

1) 실명확인리스트를 별도로 작성. 2018-001. 홍길동(비실명 ○○○)

상담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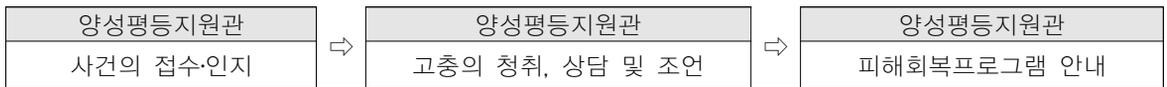
[2면]

1 <input type="checkbox"/> 행위자 <input type="checkbox"/> 피해자 <input type="checkbox"/> 기타 관련자	일시		방식	<input type="checkbox"/> 전화 <input type="checkbox"/> 온라인 <input type="checkbox"/> 서면 <input type="checkbox"/> 방문()
	• 면담 내용(별지 첨부 가능)			
2 <input type="checkbox"/> 행위자 <input type="checkbox"/> 피해자 <input type="checkbox"/> 기타 관련자	일시		방식	<input type="checkbox"/> 전화 <input type="checkbox"/> 온라인 <input type="checkbox"/> 서면 <input type="checkbox"/> 방문()
3 <input type="checkbox"/> 행위자 <input type="checkbox"/> 피해자 <input type="checkbox"/> 기타 관련자	일시		방식	<input type="checkbox"/> 전화 <input type="checkbox"/> 온라인 <input type="checkbox"/> 서면 <input type="checkbox"/> 방문()
피해자 의사확인	(피해자 의사가 초기와 달라진 부분 구체적 기재)			
처리결과	자율적 처리절차	<input type="checkbox"/> 사과 <input type="checkbox"/> 재발 방지 약속 <input type="checkbox"/> 기타()		
	공식적 처리절차	<input type="checkbox"/> 피해자 보호조치() <input type="checkbox"/> 징계절차 회부() <input type="checkbox"/> 재발방지조치() <input type="checkbox"/> 기타()		
	피해회복 프로그램	<input type="checkbox"/> 외부전문가 상담 지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처리 이후 결과	• (적절한 이행 여부,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			
상담내용 공개 의사	예방교육과 정책 수립 등을 위한 목적으로 비실명화된 상담일지의 내용 활용 가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별지 제4호 서식]

온라인신고센터 성희롱 등 사건 처리절차 안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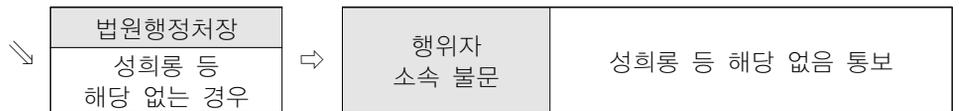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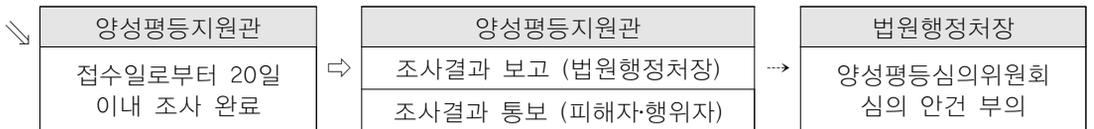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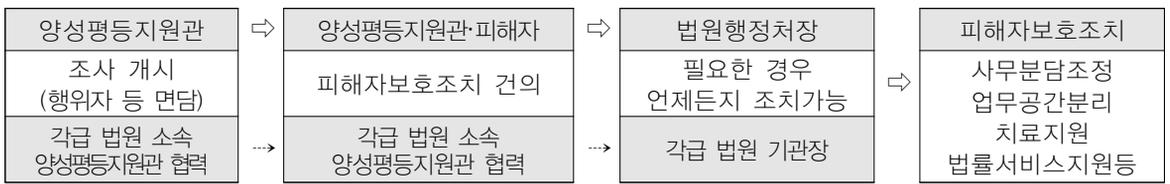
1. 상담 신청 단계(상담만 희망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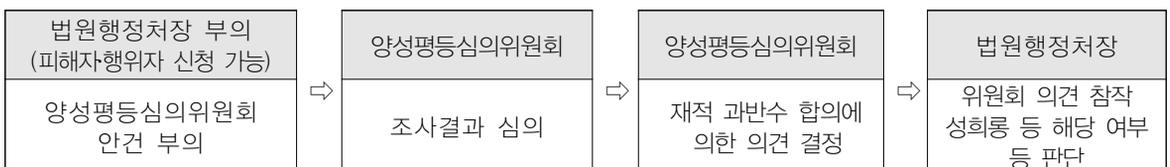
2. 조사 신청 이후 자율적 피해구제 절차



3. 공식적 처리 절차



4. 양성평등심의위원회가 소집된 경우



[별지 제5호 서식]

온라인 신고센터 성희롱·성폭력·성차별 고충 신고서

접수일				<input type="checkbox"/> 법원행정처 양성평등지원관 () <input type="checkbox"/> 소속법원 등 양성평등지원관 () (원하는 담당자를 특정하여 기재 가능)	
신고인	이름			상담·조사 및 처리를 원하는 담당자	전 화: 이메일:
	성별				
	소속			신고인 연락처	
	관계	<input type="checkbox"/> 본인 <input type="checkbox"/> 제3자			
제3자인 경우 신고에 대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희망하는 상담방식 <input type="checkbox"/> 전화 <input type="checkbox"/> 온라인 <input type="checkbox"/> 서면 <input type="checkbox"/> 방문()					
피해자	성명			성별	
	직급			소속	
행위자	성명			성별	
	직급			소속	
사건발생시기					
사건발생장소					
사건유형 <input type="checkbox"/> 성폭력 <input type="checkbox"/> 성희롱 <input type="checkbox"/> 성차별 <input type="checkbox"/> 기타()					
사건 개요 • 사건 발생 경위, 상황, 성희롱 등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는 구체적인 내용, 지속반복 여부, 목격자 혹은 증인의 유무 등을 기록합니다(첨부파일 첨부 가능함).					
피해자가 원하는 조치 (모든 항목 복수 선택 가능, 절차 진행 중 변경 가 능)	<input type="checkbox"/> 상담만 희망		<input type="checkbox"/> 상담 및 조언 <input type="checkbox"/> 피해회복 프로그램(외부전문가 상담 지원 등)		
	<input type="checkbox"/> 조사 신청 희망		<input type="checkbox"/> 피해자 보호조치 <input type="checkbox"/> 사무분담조정 <input type="checkbox"/> 업무공간분리 <input type="checkbox"/> 치료지원 <input type="checkbox"/> 법률서비스지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		
	<input type="checkbox"/> 자율적 처리 희망 <input type="checkbox"/> 자율적 처리 불희망		<input type="checkbox"/> 사과 <input type="checkbox"/> 재발 방지 약속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양성평등심의회 소집 요구		<input type="checkbox"/> 행위자에 대한 징계 <input type="checkbox"/> 재발방지조치 <input type="checkbox"/> 주의 촉구 <input type="checkbox"/> 성희롱 등 예방교육 수강 권고 <input type="checkbox"/> 심리상담 권고 <input type="checkbox"/> 피해자와 행위자의 사무분담 조정 <input type="checkbox"/> 피해자와 행위자의 업무공간 분리 <input type="checkbox"/> 기타()		

◎ 대법원 위임전결사항내규 일부개정내규

(대법원내규 제497호 2018. 6. 25. 결재)

대법원 위임전결사항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1, 7-2 및 7-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7-4를 별표 7-6으로 하고, 별표 7-4 및 별표 7-5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표 7-6(중전의 별표 7-4)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7-1. 정보화심의관

7-1. 정보화심의관

일련 번호	업 무 내 용		대법원장	처장	전 결 자		
					차장	국장	심의관
1	계획 수립· 변경	사법정보화 마스터플랜 수립	기본 계획	○			
			세부 계획		○		
		업무전산화 계획 수립	기본 계획	○			
			세부 계획		○		
		정보화촉진 시행계획 수립					○
중요 전산장비 도입 및 보급계획 수립			○				
2	정보화 예산 · 결산 · 계약지원	사법업무전산화 관련 예산(안) 수립 및 집행			○		
		정보화 사업 예산 재배정 요청					○
		정보화 사업 계약 체결 의뢰					○
		정보화 사업 선금, 기성금, 잔금 지급 의뢰					○
		정보화 사업 결산 자료 송부					○
3	계약	사업자 선정(경비 불문)			○		
		사업자 선정 이외의 경비 지출	1억원 이상		○		
			8,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8,000만원 미만				○
4	시스템 개발·운 영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경미사항					○
5	정보화 관련 제도 개선	시스템의 중요 정책 변경 사항			○		
		시스템 중요사항 개선 관련 의견 요청 또는 회신					○
		시스템 개선 관련 의견 요청 또는 회신					○
6	통계	각종 통계보고					○
		통계정정 지시 및 정정보고					○
		통계전산화 사무	중요 지침사항			○	
			세부 시행사항				○
7	행 정	정보공개, 정보제공, 전산자료의 이용승인					○

[별표]7-2. 관리운영과

7-2. 관리운영과

일련 번호	업 무 내 용		대법원장	처장	전 결 자		
					차장	국장	과장
1	청사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시설 관련 공사 및 소모품 구매				○	
		사무실 배정				○	
		공사·용역 계약 체결 의뢰 및 대금 지급 의뢰				○	
		청사관리 보고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소방시설 점검 등				○	
		전화가설 및 이전(일반 및 구내)					○
		신원조회 의뢰 및 회보(외주 용역직원)				○	
청사 출입증·주차증 발급					○		
2	정보화 사업 계약	사업자 선정(경비 불문)			○		
		사업자 선정 이외의 경비 지출	1억원 이상		○		
			8,000만원 이상 1 억원 미만			○	
			8,000만원 미만			○	
3	시스템 운영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정보시스템 사용자계정 승인					○
업무관련 사실조회, 정보공개청구 등					○		
4	통 계	각종 통계보고					○
		통계정정 지시 및 정정보고				○	
		통계전산화 사무	중요 지침사항		○		
세부 시행사항				○			
5	행 정	당직 근무	당직명령			○	
			당직변경 및 결과보고				○
		물품관리					○
		각종 행사 계획수립 및 시행				○	
		사법일지 보고				○	

[별표]7-3. 정보화지원과

7-3. 정보화지원과

일련 번호	업 무 내 용		대법원장	처장	전 결 자		
					차장	국장	과장
1	정보화사업 계획	각종 정보화 업무의 정책 수립 및 결과 보고				○	
		각종 정보화 사업의 추진 관련 세부계획 보고				○	
2	프로젝트 관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3	데이터센터 운영	데이터센터 운영 및 전산망관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시스템 권한 관리					○
4	시스템 운영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 관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정보시스템 사용자계정 승인					○
		업무관련 사실조회, 정보공개청구, 통계 등 무인민원발급기 관리에 관한 사항					○
5	품질 및 교육	감리 및 품질 관련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각급 법원 전산직 교육				○	

[별표]7-4. 정보화운영과

7-4. 정보화운영과

일련 번호	업 무 내 용		대법원장	처장	전 결 자		
					차장	국장	과장
1	정보화 사업 계획	각종 정보화 업무의 정책 수립 및 결과 보고				○	
		각종 정보화 사업의 추진 관련 세부계획 보고				○	
2	프로젝트 관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3	시스템 운영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정보시스템 사용자계정 관리					○
		사실조회, 정보공개청구, 통계 등 사용자 교육					○

[별표]7-5. 사이버안전과

7-5. 사이버안전과

일련 번호	업 무 내 용		대법원장	처장	전 결 자		
					차장	국장	과장
1	계획 수립, 변경	사법부 보안 정책 수립				○	
		사법부 개인정보보호 시행 계획 수립				○	
2	프로젝트 관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3	시스템운영	보안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보안관계 관련 보고				○	
		업무관련 사실조회, 정보공개청구, 통 계 등					○
		전자법정 관련				○	
4	개인정보보호	중요사항				○	
		일반사항					○

[별표]7-6. 법원기록보존소

7-6. 법원기록보존소

일련 번호	업 무 내 용		대법원장	처장	전결자	
					차장	소장
1	법원기록물관리	법원기록물관리의 기본계획		○		
		법원기록물 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
2	법원기록물의 수집·보존·활용	기본계획			○	
		세부시행사항				○
3	법원기록물의 정리·이관·폐기	기본계획 및 결과보고		○		
		세부시행사항				○
4	법원기록물분류기준표의 제정 및 관리	기록물분류기준표의 제·개정			○	
		기록물분류기준표 변경신청				○
5	법원기록물의 평가 및 분류	중요사항			○	
		일반사항				○
6	국내외 기록보존 관련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	중요사항			○	
		일반사항				○
7	재판서 및 사건기록의 보존·이관·폐기	기본계획 및 결과보고		○		
		세부시행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별표]7-1. 정보화심의관
7-1. 정보화심의관

일련 번호	업 무 내 용		대법 원장	처장	전 결 자		
					처장	국장	심의관
1	계획 수립· 변경	사법정보화 마스터플랜 수립	기본 계획	○			
			세부 계획		○		
		업무전산화 계획 수립	기본 계획	○			
			세부 계획		○		
		정보화촉진 시행계획 수립				○	
중요 전산장비 도입 및 보급계획 수립		○					
2	정보화 예산· 결산· 계약지원	사법업무전산화 관련 예산(안) 수립 및 집행			○		
		정보화 사업 예산 재배정 요청				○	
		정보화 사업 계약 체결 의뢰				○	
		정보화 사업 선급, 기성금, 잔금 지급 의뢰				○	
		정보화 사업 결산 자료 송부				○	
3	계약	사업자 선정(제안평가 수반 사업)			○		
		연 단위 계약(각종 유지보수 계약)			○		
		수시 체결 계약	구매·설치 등 계약		○		
			8,000만원 이상		○		
			5,0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			○	
5,000만원 미만			○				
4	시스템 개발, 운영	프로젝트 수행 관련 국의 출장			○		
		외주업체의 프로젝트 관련 정기보고(착수, 중간, 완료)				○	
		외주업체의 프로젝트 관련 중요 업무보고				○	
		산출물 시정요구와 승인				○	
		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의 중요사항 변경				○	
		데이터 센터의 운영과 유지				○	
시스템 권한 관리				○			
5	통계	각종 통계보고				○	
		통계보고 하급사항				○	
		통계정정 지시 및 정정보고				○	
통계전산화 사무	중요 지점사항		○				
	세부 시행사항			○			
6	정보화 관련 제도 개선	시스템의 중요 정책 변경 사항			○		
		시스템 중요사항 개선 관련 의견 요청 또는 회신				○	
		시스템 개선 관련 의견 요청 또는 회신				○	
7	행정	정보공개, 정보제공, 전산자료의 이용승인				○	
8	보안	보안 운영 계획과 수행				○	
9	전산장비 보급	전산장비 수급계획 수립			○		
		전산장비 선정(사업자 선정 포함), 일반 배정				○	

개정안

[별표]7-1. 정보화심의관
7-1. 정보화심의관

일련 번호	업 무 내 용		대법 원장	처장	전 결 자		
					처장	국장	심의관
1	계획 수립· 변경	사법정보화 마스터플랜 수립	기본 계획	○			
			세부 계획		○		
		업무전산화 계획 수립	기본 계획	○			
			세부 계획		○		
		정보화촉진 시행계획 수립					○
2	정보화 예산· 결산· 계약지 원	사법업무전산화 관련 예산(안) 수립 및 집행				○	
		정보화 사업 예산 재배정 요청				○	
		정보화 사업 계약 체결 의뢰				○	
		정보화 사업 선급, 기성금, 잔금 지급 의뢰				○	
		정보화 사업 결산 자료 송부				○	
3	계약	사업자 선정(경비 불분)			○		
		사업자 선정 이외의 경비 지출	1억원 이상		○		
			8,000만원 이상 1 억원 미만			○	
8,000만원 미만				○			
4	시스템 개발· 운영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경미사항					○
5	정보화 관련 제도 개선	시스템의 중요 정책 변경 사항			○		
		시스템 중요사항 개선 관련 의견 요청 또는 회신				○	
시스템 개선 관련 의견 요청 또는 회신					○		
6	통계	각종 통계보고				○	
		통계정정 지시 및 정정보고				○	
		통계전산화 사무	중요 지점사항		○		
세부 시행사항				○			
7	행정	정보공개, 정보제공, 전산자료의 이용승인				○	

현 행

[별표]7-2. 관리운영과
7-2. 관리운영과

일련 번호	업 무 내 용		대법 원장	처장	진 결 자			
					차장	국장	과장	
1	청사· 관리 운영에 관련 사항	시설 관련 공사 및 소모품 구매				○		
		사무실 배정				○		
		공사용역 계약 체결 의뢰 및 대금 지급 의뢰				○		
		청사관리 보고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소방시설 점검 등				○		
		전화가설 및 이전(일반 및 구내)					○	
		신원조회 의뢰 및 회보(외주 용역직원)				○		
		청사 출입증주차증 발급					○	
		2	행정	당직 근무	당직명령			
당직변경 및 결과보고							○	
물품관리						○		
각종 행사 계획수립 및 시행					○			
		사법일지 보고				○		

개 정 안

[별표]7-2. 관리운영과
7-2. 관리운영과

일련 번호	업 무 내 용		대법 원장	처장	진 결 자			
					차장	국장	과장	
1	청사· 관리 운영에 관련 사항	시설 관련 공사 및 소모품 구매				○		
		사무실 배정				○		
		공사용역 계약 체결 의뢰 및 대금 지급 의뢰				○		
		청사관리 보고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소방시설 점검 등				○		
		전화가설 및 이전(일반 및 구내)					○	
		신원조회 의뢰 및 회보(외주 용역직원)				○		
		청사 출입증주차증 발급					○	
		2	정보화 사업 계약	사업자 선정(경비 부문)		○		
1억원 이상 8,000만원 이상 1억원 미 만 8,000만원 미만					○			
3	시스템 운영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정보시스템 사용자계정 승인				○		
		업무관련 사실조회, 정보공개청구 등				○		
4	통 계	각종 통계보고					○	
		통계정정 지시 및 정정보고				○		
		통계전산화 사무	중요 지침사항			○		
세부 시행사항					○			
5	행 정	당직 근무	당직명령				○	
			당직변경 및 결과보고					○
		물품관리					○	
		각종 행사 계획수립 및 시행				○		
		사법일지 보고					○	

현행

[별표]7-3. 정보화지원과
7-3. 정보화지원과

일련번호	업무내용		대법원장	처장	전결자			
					차장	국장	과장	
1	청사·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시설 관련 공사 및 소모품 구매				○		
		사무실 배정				○		
		공사용역 계약 체결 의뢰 및 대금 지급 의뢰				○		
		청사관리 보고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소방시설 점검 등				○		
		전화가설 및 이전(일반 및 구내)					○	
		신원조회 의뢰 및 회보(외주 용역직원)					○	
청사 출입증·주차증 발급					○			
2	행정	당직 근무	당직명령			○		
			당직변경 및 결과보고				○	
		물품관리				○		
		각종 행사 계획수립 및 시행				○		
		사법일지 보고				○		

<신설>

개정안

[별표]7-3. 정보화지원과
7-3. 정보화지원과

일련번호	업무내용		대법원장	처장	전결자		
					차장	국장	과장
1	정보화사업 계획	각종 정보화 업무의 정책 수립 및 결과 보고				○	
		각종 정보화 사업의 추진 관련 세부계획 보고				○	
2	프로젝트 관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3	데이터센터 운영	데이터센터 운영 및 전산망관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시스템 권한 관리					○
4	시스템 운영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정보시스템 사용자계정 승인					○
		업무관련 사실조회, 정보공개청구, 통계 등					○
		무인민원발급기 관리에 관한 사항				○	
5	품질 및 교육	감리 및 품질 관련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각급 법원 전산직 교육					○

[별표]7-4 정보화운영과
7-4. 정보화운영과

일련번호	업무내용		대법원장	처장	전결자		
					차장	국장	과장
1	정보화사업 계획	각종 정보화 업무의 정책 수립 및 결과 보고				○	
		각종 정보화 사업의 추진 관련 세부계획 보고				○	
2	프로젝트 관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3	시스템 운영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정보시스템 사용자계정 관리					○
		사실조회, 정보공개청구, 통계 등					○
		사용자 교육				○	

현행

<신설>

[별표]7-4 법원기록보존소

7-4. 법원기록보존소

일련 번호	업 무 내 용	대법원 장	처장	전결자	
				차장	소장
1	법원기록물관리		○		
	법원기록물관리의 기본계획				
2	법원기록물의 수집·보존·활용			○	
	법원기록물 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
3	법원기록물의 정리·이관·폐기			○	
	기본계획				
4	법원기록물분류기준 표의 제정 및 관리		○		
	기록물분류기준표의 재·개정				
5	법원기록물의 평가 및 분류			○	
	기록물분류기준표 변경신청				○
6	국내외 기록보존 관련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			○	
	중요사항				
7	재판서 및 사건기록의 보존·이관·폐기			○	
	기본계획				

개정안

[별표]7-5 사이버안전과

7-5. 사이버안전과

일련 번호	업 무 내 용	대법원 장	처장	전 결 자			
				차장	국장	과장	
1	계획 수립, 변경				○		
	사법부 보안 정책 수립						
2	프로젝트 관리				○		
	중요사항						
3	시스템운영				○		
				사법부 개인정보보호 시행 계획 수립		○	
				보안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중요사항		
				일반사항		○	
4	개인정보보호				○		
				보안관계 관련 보고		○	
				업무관련 사실조회, 정보공개청구, 통계 등			○
5	전자법정 관련				○		
				중요사항			
6	일반사항				○		
				중요사항			

[별표]7-6 법원기록보존소

7-6. 법원기록보존소

일련 번호	업 무 내 용	대법원 장	처장	전결자	
				차장	소장
1	법원기록물관리		○		
	법원기록물관리의 기본계획				
2	법원기록물의 수집·보존·활용			○	
	법원기록물 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
3	법원기록물의 정리·이관·폐기		○		
	기본계획				
4	법원기록물분류 기준표의 제정 및 관리				
	기록물분류기준표의 재·개정				
5	법원기록물의 평가 및 분류			○	
	기록물분류기준표 변경신청				○
6	국내외 기록보존 관련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			○	
	중요사항				
7	재판서 및 사건기록의 보존·이관·폐기		○		
	기본계획 및 결과보고				
8	일반사항				○
	중요사항				

◎ **각급 기관 및 직위의 영문표기에 관한 내규 일부개정내규**

(대법원내규 제498호 2018. 6. 25. 결재)

각급 기관 및 직위의 영문표기에 관한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4. 대법원 산하 기관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4. 대법원 산하 기관

국문 명칭	영문 명칭
법 원 행 정 처	National Court Administration
법 원 행 정 처 장	Minister of National Court Administration
법 원 행 정 처 차 장	Vice Minister of National Court Administration
기 획 조 정 실	Planning and Coordination Office
기 획 조 정 실 장	Chief of Planning and Coordination Office
기 획 총 괄 심 의 관	Director General for Planning
기 획 조 정 심 의 관	Director of Planning and Coordination
기 획 제 1 심 의 관	Director of Planning 1
기 획 제 2 심 의 관	Director of Planning 2
국 제 심 의 관	Director of International Affairs
예 산 담 당 관	Director of Budget
조 직 심 의 관	Director of Organization Management
기 술 담 당 관	Director of Facility Management
시 설 담 당 관	Director of Facility Planning
사 법 지 원 실	Judicial Procedure Office
사 법 지 원 실 장	Chief of Judicial Procedure Office
사 법 지 원 총 괄 심 의 관	Director General for Judicial Procedure
사 법 지 원 심 의 관	Director of Judicial Procedure
사 법 정 책 실	Judicial Policy Office
사 법 정 책 실 장	Chief of Judicial Policy Office
사 법 정 책 총 괄 심 의 관	Director General for Judicial Policy
사 법 정 책 심 의 관	Director of Judicial Policy
행 정 관 리 실	Administrative Management Office
행 정 관 리 실 장	Chief of Administrative Management Office
총 무 담 당 관	Director of General Services

국문 명칭	영문 명칭
인 력 운 영 심 의 관	Director of Human Resources
재 무 담 당 관	Director of Finance
복 지 후 생 담 당 관	Director of Welfare Benefits
사 법 등 기 국	Registration Bureau
사 법 등 기 국 장	Chief of Registration Bureau
사 법 등 기 심 의 관	Director of Registration
가 족 관 계 등 록 과 장	Director of Family Registration
부 동 산 등 기 과 장	Director of Real Estate Registration
재외국민가족관계등록사무소장	Director of Family Register Office for Overseas Koreans
전 산 정 보 관 리 국	Judicial IT Bureau
전 산 정 보 관 리 국 장	Chief of Judicial IT Bureau
정 보 화 심 의 관	Director of Judicial IT
관 리 운 영 과 장	Director of Judicial IT Facility Management
정 보 화 지 원 과 장	Director of Judicial IT Support
정 보 화 운 영 과 장	Director of Judicial IT Management
사 이 버 안 전 과 장	Director of Cyber Security
법 원 기 록 보 존 소	Judicial Archives Center
재 판 사 무 국	Supreme Court Litigation Bureau
재 판 사 무 국 장	Chief of Supreme Court Litigation Bureau
종 합 민 원 과 장	Director of General Civil Petition
민 사 과 장	Director of Civil Litigation
형 사 과 장	Director of Criminal Litigation
윤 리 감 사 관	Inspector General for Judicial Ethics
윤 리 감 사 기 획 심 의 관	Director of Judicial Ethics and Inspection Planning
윤 리 감 사 제 1 심 의 관	Director of Judicial Ethics and Inspection 1
윤 리 감 사 제 2 심 의 관	Director of Judicial Ethics and Inspection 2
인 사 총 괄 심 의 관	Director General for Personnel Affairs
인 사 제 1 심 의 관	Director of Personnel Affairs 1

국문 명칭	영문 명칭
인 사 제 2 심 의 관	Director of Personnel Affairs 2
인 사 기 획 심 의 관	Director of Personnel Planning
인 사 운 영 심 의 관	Director of Personnel Management
공 보 관	Director General for Public Relations
홍 보 심 의 관	Director of Public Relations
안 전 관 리 관	Director General of Security Management
대 법 원 보 안 관 리 대	Supreme Court Security Management Unit
법 원 도 서 관	Supreme Court Library
법 원 도 서 관 장	President of Supreme Court Library
조 사 심 의 관	Director of Judicial Research
사 법 연 수 원	Judicial Research & Training Institute(JRTI)
사 법 연 수 원 장	President of Judicial Research & Training Institute
사 법 연 수 원 교 수	Professor of Judicial Research & Training Institute
사 법 연 수 생	Trainee of Judicial Research & Training Institute
사 법 정 책 연 구 원	Judicial Policy Research Institute
사 법 정 책 연 구 원 장	President of Judicial Policy Research Institute
법 원 공 무 원 교 육 원	Training Institute for Court Officials
법 원 공 무 원 교 육 원 장	President of Training Institute for Court Officials
법 원 공 무 원 교 육 원 교 수	Professor of Training Institute for Court Officials
양 형 위 원 회	Sentencing Commission
양 형 위 원 회 위 원 장	Chairperson of Sentencing Commission
양 형 위 원 회 상 임 위 원	Standing Commissioner of Sentencing Commission
양 형 위 원 회 운 영 지원 단 장	Secretary-General of Sentencing Commission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별표 1]

각급 기관 및 직위의 영문표기
English Names for Judicial Institutions and Positions

4. 대법원 산하 기관

국문 명칭	영문 명칭
(생략)	
전산정보관리국	Judicial IT Bureau
전산정보관리국장	Chief of Judicial IT Bureau
정보화심의관	Director of Judicial IT
관리운영과장	Director of Judicial IT Facility Management
정보화지원과장	Director of Judicial IT Support
정보화운영과장	Director of Judicial IT Management
〈신설〉	〈신설〉
법원기록보존소	Judicial Archives Center
(이하 생략)	

개정안

[별표 1]

각급 기관 및 직위의 영문표기
English Names for Judicial Institutions and Positions

4. 대법원 산하 기관

국문 명칭	영문 명칭
(생략)	
전산정보관리국	Judicial IT Bureau
전산정보관리국장	Chief of Judicial IT Bureau
정보화심의관	Director of Judicial IT
관리운영과장	Director of Judicial IT Facility Management
정보화지원과장	Director of Judicial IT Support
정보화운영과장	Director of Judicial IT Management
사이버안전과장	<u>Director of Cyber Security</u>
법원기록보존소	Judicial Archives Center
(이하 생략)	

예 규

◎ 수신자기호 부여예규 일부개정예규

(대법원행정예규 제1152호 2018. 6. 27. 결재)

수신자기호 부여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갑란(수신자기호 및 기관명) 및 을란(수신자기호 및 기관명)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을란의 울산가정법원에 관한 사항은 201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지

갑	기관명	갑	기관명	갑	기관명
100011	대법원장비서실	100221	윤리감사기획심의관	100600	행정관리실장
100030	대 법 관	100222	윤리감사제1심의관	100601	인력운영심의관
100031	재 판 연 구 관	100223	윤리감사제2심의관	100602	총 무 담 당 관
100040	대 법 관	100230	공 보 관	100603	재 무 담 당 관
100041	재 판 연 구 관	100231	홍 보 심 의 관	100604	복지후생담당관
100050	대 법 관	100240	인사총괄심의관	100700	재 판 사 무 국 장
100051	재 판 연 구 관	100241	인사제1심의관	100701	종 합 민 월 과
100060	대 법 관	100242	인사제2심의관	100702	민 사 과
100061	재 판 연 구 관	100243	인사운영심의관	100703	형 사 과
100070	대 법 관	100300	기획조정실장	100800	사법등기국장
100071	재 판 연 구 관	100301	기획총괄심의관	100801	사법등기심의관
100080	대 법 관	100302	기획조정심의관	100802	가족관계등록과
100081	재 판 연 구 관	100303	기획제1심의관	100803	부 동 산 등 기 과
100090	대 법 관	100304	기획제2심의관	100804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100091	재 판 연 구 관	100305	국 제 심 의 관	100990	안 전 관 리 관
100100	대 법 관	100306	조 직 심 의 관	110000	사 법 연 수 원
100101	재 판 연 구 관	100307	예 산 담 당 관	120000	사법정책연구원
100110	대 법 관	100308	시 설 담 당 관	130000	법원공무원교육원
100111	재 판 연 구 관	100309	기 술 담 당 관	140000	법 원 도 서 관
100120	대 법 관	100400	사법지원실장	150000	양 형 위 원 회
100121	재 판 연 구 관	100401	사법지원총괄심의관	160000	전국법원장회의
100130	대 법 관	100402	사법지원심의관	170000	전국법관대표회의
100131	재 판 연 구 관	100411	사법정책총괄심의관		
100140	대 법 관	100412	사법정책심의관		
100141	재 판 연 구 관	100500	전산정보관리국장		
100142	수석재판연구관	100501	정보화심의관		
100143	선임재판연구관	100502	관리운영과		
100144	공동재판연구관	100503	정보화지원과		
100200	법원행정처장	100504	정보화운영과		
100210	법원행정처차장	100506	사이버안전과		
100220	윤 리 감 사 관	100505	법원기록보존소		

을	기관명	병	기관명	병	기관명
200000	서울고등법원	540000	광주가정법원	318000	서부지원
600000	대전고등법원	201000	서울고등원외재판부(춘천)	412000	부산동부지원
300000	대구고등법원	401000	부산고등원외재판부(창원)	413000	부산서부지원
400000	부산고등법원	501000	광주고등원외재판부(제주)	421000	진주지원
500000	광주고등법원	502000	광주고등원외재판부(전주)	422000	통영지원
700000	특허법원	601000	대전고등원외재판부(창주)	423000	밀양지원
210000	서울중앙지방법원	216000	고양지원	424000	거창지원
230000	서울가정법원	241000	부천지원	425000	마산지원
220000	서울행정법원	251000	성남지원	511000	목포지원
610000	서울회생법원	252000	여주지원	512000	장흥지원
211000	서울동부지방법원	253000	평택지원	513000	순천지원
212000	서울남부지방법원	254000	안산지원	514000	해남지원
213000	서울북부지방법원	255000	안양지원	521000	군산지원
215000	서울서부지방법원	261000	강릉지원	522000	정읍지원
214000	의정부지방법원	262000	원주지원	523000	남원지원
240000	인천지방법원	263000	속초지원		
241000	인천가정법원	264000	영월지원		
250000	수원지방법원	281000	홍성지원		
260000	춘천지방법원	282000	논산지원		
270000	청주지방법원	283000	천안지원		
280000	대전지방법원	284000	공주지원		
290000	대전가정법원	285000	서산지원		
310000	대구지방법원	271000	충주지원		
320000	대구가정법원	272000	제천지원		
410000	부산지방법원	273000	영동지원		
420000	창원지방법원	311000	안동지원		
430000	울산지방법원	312000	경주지원		
440000	부산가정법원	313000	김천지원		
450000	울산가정법원	314000	상주지원		
510000	광주지방법원	315000	의성지원		
520000	전주지방법원	316000	영덕지원		
530000	제주지방법원	317000	포항지원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별표 1]

법원공문서 수신자기호

갑	기관명
(생략)	
100500	전산정보관리국장
100501	정보화심의관
100502	관리운영과
100503	정보화지원과
100504	정보화운영과
〈신설〉	〈신설〉
100505	법원기록보존소
(이하 생략)	

[별표 1]

법원공문서 수신자기호

을	기관명
(생략)	
410000	부산지방법원
420000	창원지방법원
430000	울산지방법원
440000	부산가정법원
〈신설〉	〈신설〉
510000	광주지방법원
520000	전주지방법원
530000	제주지방법원
540000	광주가정법원
(이하 생략)	

개정안

[별표 1]

법원공문서 수신자기호

갑	기관명
(생략)	
100500	전산정보관리국장
100501	정보화심의관
100502	관리운영과
100503	정보화지원과
100504	정보화운영과
100506	사이버안전과
100505	법원기록보존소
(이하 생략)	

[별표 1]

법원공문서 수신자기호

을	기관명
(생략)	
410000	부산지방법원
420000	창원지방법원
430000	울산지방법원
440000	부산가정법원
450000	울산가정법원
510000	광주지방법원
520000	전주지방법원
530000	제주지방법원
540000	광주가정법원
(이하 생략)	

● 신법령 목록 (2018. 6. 16. ~ 6. 30.)

		공포일	관보호수	관보면수
【대통령령】				
대통령령제28949호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일부개정령중정정	2018. 6. 18	19277	3
대통령령제28971호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	2018. 6. 19	19278	5
대통령령제28972호	한국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5
대통령령제28973호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6
대통령령제28974호	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7
대통령령제28975호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7
대통령령제28976호	공증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0
대통령령제28977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	"	12
대통령령제28978호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2
대통령령제28979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8
대통령령제28980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9
대통령령제28981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0
대통령령제28982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2
대통령령제28983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4
대통령령제28984호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	"	24
대통령령제28985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34
대통령령제28986호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35
대통령령제28987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37
대통령령제28988호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8. 6. 26	19283	4
대통령령제28989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9
대통령령제28990호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0
대통령령제28991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1
대통령령제28992호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3
대통령령제28993호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5

대통령령제28994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2018. 6. 26	19283	19
대통령령제28995호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1
대통령령제28996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7
대통령령제28997호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31
대통령령제28998호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33
대통령령제28999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	"	"	44
대통령령제29000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45
대통령령제29001호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53
대통령령제2900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64
대통령령제29003호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68
대통령령제29004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69
대통령령제29005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70
대통령령제29006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73
대통령령제29007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74
대통령령제29008호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76
대통령령제29009호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	"	"	78
대통령령제29010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8. 6. 29	19286	6

【총리령】

총리령제1468호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8. 6. 20	19279	3
총리령제1470호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8. 6. 21	19280	3
총리령제1471호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8. 6. 28	19285	4
총리령제1472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4
총리령제1473호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2018. 6. 29	19286	7
총리령제1474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7

【부령】

국토교통부령제521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8. 6. 18	19277	141
법무부령제932호	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2018. 6. 19	19278	38

행정안전부령제61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8. 6. 19	19278	40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12호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8. 6. 20	19279	3
보건복지부령제577호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4
보건복지부령제578호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	"	21
보건복지부령제579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43
보건복지부령제580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43
국토교통부령제525호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	"	49
국토교통부령제522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증정정	"	"	57
국토교통부령제526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8. 6. 22	19281	4
법무부령제933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5
고용노동부령제222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8
교육부령제159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8. 6. 25	19282	4
국방부령제964호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일부개정령	"	"	4
국토교통부령제491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증정정	"	"	5
법무부령제934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8. 6. 26	19283	84
행정안전부령제62호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88
환경부령제768호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8. 6. 27	19284	4
기획재정부령제682호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5
국토교통부령제527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2
국토교통부령제528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3
국토교통부령제529호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7
국토교통부령제530호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37
국토교통부령제531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44
행정안전부령제64호	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8. 6. 28	19285	6
농림축산식품부령제323호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9
산업통상자원부령제302호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30
환경부령제769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39
국토교통부령제532호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	"	43
국토교통부령제533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45
행정안전부령제63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8. 6. 29	19286	24

문화체육관광부령제330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2018. 6. 29	19286	25
농림축산식품부령제324호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일부개정령	"	"	26
산업통상자원부령제303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전부 개정령	"	"	37
산업통상자원부령제304호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11
보건복지부령제581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13
보건복지부령제58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17
보건복지부령제583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	"	141
보건복지부령제584호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143
고용노동부령제223호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60

인 사

인사발령 법 제109호

2018. 6. 15.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 사법연구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정다주(鄭多周)	사법연구를 명함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상인(朴庠彦)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부장판사	김민수(金旻秀)	"
			(2018. 6. 18.자) 끝.

인사발령 법 제111호

2018. 6. 19.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 복 직			
가. 지방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사	이수웅(李秀雄)	복직을 명함. 9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사에 포함
			(2018. 6. 30.자) 끝.

인사발령 법 제112호

2018. 6. 19.

항	소속 및 직위	성명	인사명령
1. 호봉재획정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최석문(崔碩文)	15호봉을 급함. 법관의 승급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의3 제1항 제1호에 의함
			(2018. 7. 1.자) 끝.

인사발령 법 제113호

2018. 6. 21.

항	소속 및 직위	성명	인사명령
1. 전 보			
가. 검사장			
	대 법 원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	노승권(盧承權)	사법연수원 부원장에 포함
			(2018. 6. 22.자) 끝.

인사발령 법 제115호

2018. 6. 21.

항	소속 및 직위	성명	인사명령
1. 교육파견 및 교육파견기간 연장(학위과정)			
가.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홍영진(洪榮珍)	2018. 7. 23.부터 2019. 7. 22.까지 미국 조지타운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서울회생법원 판사	김영석(金永錫)	2018. 7. 23.부터 2019. 7. 22.까지 미국 버지니아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수원지방법원 판사	임현태(林炫兌)	2018. 7. 13.부터 2019. 7. 12.까지 미국 펜실베니아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	이경민(李京珉)	2018. 7. 23.부터 2019. 7. 22.까지 미국 뉴욕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대전지방법원 판사	이재원(李裁源)	2018. 7. 23.부터 2019. 7. 22.까지 미국 듀크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흥성지원 판사	박광선(朴光宣)	2018. 7. 23.부터 2019. 7. 22.까지 미국 UCLA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사)	박동규(朴東奎)	2018. 7. 23.부터 2019. 7. 22.까지 영국 런던(LSE)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대구지방법원 판사	이창민(李彰敏)	2018. 7. 13.부터 2019. 7. 12.까지 미국 하버드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판사	이재찬(李在璨)	2018. 7. 23.부터 2019. 7. 22.까지 미국 컬럼비아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춘천지방법원 판사	이희경(李熙慶)	2018. 7. 17.부터 2019. 1. 16.까지 미국 조지타운대학 교육파견기간을 연장함
	대전지방법원 판사	유제민(柳濟璿)	2018. 7. 17.부터 2019. 1. 16.까지 미국 UC버클리대학 교육파견기간을 연장함. 끝.

인사발령 법 제117호

2018. 6. 22.

항	소속 및 직위	성명	인사명령
---	---------	----	------

1. 전 보

가. 고등법원 판사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판사	양석용(梁碩容)	부산고등법원 판사(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에 포함
-----------------------	----------	------------------------------

(2018. 7. 7.자)

나. 지방법원 판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사	오대석(吳大錫)	부산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춘천지방법원 판사	이혜미(李惠美)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에 포함

(2018. 7. 17.자)

2. 휴직 및 휴직기간 연장

가. 고등법원 부장판사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백강진(白康鎭)	2018. 7. 6.부터 2019. 7. 5.까지 휴직기간을 연장함
-------------	----------	---------------------------------------

나.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장원지(張愿支)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8. 7. 16.부터 2018. 10. 19.까지 휴직을 명함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홍은기(洪銀基)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8. 7. 23.부터 2020. 2. 22.까지 휴직을 명함

항	소속 및 직위	성명	인사명령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김윤희(金倫希)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8. 7. 17.부터 2019. 2. 23.까지 휴직을 명함
	“	이인민(李仁玟)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8. 7. 11.부터 2019. 2. 15.까지 휴직을 명함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김성겸(金成謙)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8. 7. 1.부터 2018. 8. 31.까지 휴직을 명함
	인천지방법원 판사	김은엽(金恩燁)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8. 7. 1.부터 2019. 2. 24.까지 휴직을 명함
	수원지방법원 판사	박병민(朴炳敏)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8. 7. 17.부터 2018. 10. 16.까지 휴직을 명함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	이혜민(李慧民)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8. 7. 17.부터 2019. 1. 16.까지 휴직을 명함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강수희(姜秀熹)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8. 7. 1.부터 2019. 2. 22.까지 휴직을 명함
	창원지방법원 판사	이하윤(李河倫)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8. 7. 30.부터 2019. 7. 29.까지 휴직을 명함

항	소속 및 직위	성명	인사명령
3. 복직			
가. 지방법원 판사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김성겸(金成謙)	복직을 명함. 6호봉을 급함. 의정부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18. 7. 1.자)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윤지숙(尹智淑)	복직을 명함. 7호봉을 급함. 의정부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18. 7. 16.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조인영(趙麟英)	복직을 명함. 10호봉을 급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김윤희(金倫希)	복직을 명함. 7호봉을 급함.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18. 7. 17.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신순영(辛順英)	복직을 명함. 8호봉을 급함.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18. 7. 21.자)

항	소속 및 직위	성명	인사명령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박주영(朴珠瑛)	복직을 명함. 6호봉을 급함. 광주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8. 7. 24.자) 끝.			

인사발령 법 제118호

2018. 6. 26.

항	소속 및 직위	성명	인사명령
1. 사법연구			
가. 고등법원 부장판사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최창영(崔昌永)	2018. 7. 23.부터 2018. 8. 17.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전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황진구(黃進九)	2018. 7. 18.부터 2018. 8. 14.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나.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오민석(吳旻錫)	2018. 7. 16.부터 2018. 8. 10.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	이동욱(李銅郁)	2018. 7. 2.부터 2018. 7. 28.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	조미옥(曹美玉)	2018. 7. 30.부터 2018. 8. 26.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김상규(金祥圭)	2018. 7. 26.부터 2018. 8. 20.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항	소속 및 직위	성명	인사명령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현용선(玄容先)	2018. 7. 2.부터 2018. 7. 27.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용한(金容漢)	2018. 7. 17.부터 2018. 8. 13.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	심형섭(沈亨燮)	2018. 7. 23.부터 2018. 8. 17.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황현찬(黃鉉贊)	2018. 7. 1.부터 2018. 7. 28.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명한(金明漢)	2018. 7. 9.부터 2018. 8. 3.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심준보(沈俊輔)	2018. 7. 23.부터 2018. 8. 17.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성철(李性哲)	2018. 7. 23.부터 2018. 8. 17.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	정선오(鄭善晤)	2018. 7. 16.부터 2018. 8. 10.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상균(李相均)	2018. 7. 30.부터 2018. 8. 24.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다.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서울고등법원 판사	문주형(文柱馨)	2018. 7. 20.부터 2018. 8. 16.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	신숙희(申叔熹)	2018. 7. 23.부터 2018. 8. 19.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대전고등법원 판사	기우중(奇佑鍾)	2018. 7. 23.부터 2018. 8. 17.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끝.

● 공지사항

◎ 6월 신착 법률·일반도서 및 법률 학술잡지 등 목록 게재

법원도서관에 6월분 법률도서(218책), 일반도서(9책) 및 법률학술잡지 등(127종)이 입수되어 다음과 같이 비치되었습니다.

• 법률도서

[법률]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2018년도) 제1회 판례연구회 / 한국민사법학회	한국민사법학회	2018	
(법조문으로 본) 法學原論 / 리염충	동방문화사	2018	
법률용어사전: 중요 법률용어를 4개국어로 표시 / 이병태	법문북스	2018	
법의 깊이 / 이상돈	법문사	2018	
시장 리버럴의 시점: 이념, 시장, 입법에 관한 에세이 모음 / 정호열	박영사	2018	
圓光法學 v.31-1 / 원광대학교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圓光法學 v.31-2 / 원광대학교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圓光法學 v.31-3 / 원광대학교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圓光法學 v.31-4 / 원광대학교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圓光法學 v.32-1 / 원광대학교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圓光法學 v.32-2 / 원광대학교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圓光法學 v.32-3 / 원광대학교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圓光法學 v.32-4 / 원광대학교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圓光法學 v.33-1 / 원광대학교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圓光法學 v.33-2 / 원광대학교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圓光法學 v.33-3 / 원광대학교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圓光法學 v.33-4 / 원광대학교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圓光法學 v.34-1 / 원광대학교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중국법의 이해: Understanding Chinese law / 정연부	대학로	2018	
한국민사법학회 2018년도 제2회 판례연구회: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 한국민사법학회 판례연구회 공동학술대회 / 한국민사법학회, 판례연구소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責任と法意識の人間科学 / 唐沢穰	勁草書房	2017	
Artificial intelligence and law v.26-1 / Springer Science + Business Media	Springer Science + Business Media	2018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 v.51-2 / Columbia University School of Law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	2017	
Harvard law review v.131-1 / Harvard University Law School	Harvard Law Review Association	2017	
Harvard law review v.131-5 / Harvard University Law School	Harvard Law Review Association	2018	
Harvard law review v.131-6 / Harvard University Law School	Harvard Law Review Association	2018	
Kritische Justiz: KJ v.51-1 / Buckel, Sonja	Nomos	2018	
Stanford law review v.70-3 / Board of Trustees of the Leland Stanford Junior University	Stanford Junior University	2018	
Washington university global studies law review v.16-3 /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Washington University School of Law	2017	

[법제사]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法史學研究 v.57 / 한국법사학회	韓國法史學會	2018	

[제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Visual) 지식재산권강의 / 정태호	진원사	2018	
(넓고 깊고 종합적으로 보는)임금과 복지: 넓깊중 임금과 복지 / 김부창	한올아카데미	2017	
(理智) 상표법 / 박종태	한빛지적소유권센터	2018	
(중소건설회사 및 하도급업자를 위한) 건설, 하도급 분쟁사례 / 권형필	지혜와지식	2018	
(최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설 / 안윤상	노해출판사	2018	
(코어) 디자인보호법 / 공경식	한빛지적소유권센터	2018	
(현대인을 위한) 필수금융법: Financial law / 진흥기	法文社	2018	
고용정책학원론 / 임공수	청목출판사	2018	
관세법 해설 / 이종익	세경사	2018	
국제조세의 이론과 실무 / 김인근	광교이텍스	2018	
기업법실무강의: 다국적기업 MNE. II / 정웅기	충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18	
노동법과 민법 / 김명철	인쇄박사	2018	
노동법편람: 법·령·규칙 대사식. 2018 / 중앙경제	중앙경제	2018	
노동조합의 사회적 위상과 미래의 역할 /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2017	
농지법 이론과 실무: 2018 제7판 / 안재길	법률정보센터	201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해설 / 맹신균	법률&출판	2018	
독점규제법과 경제학 / 강대형	Lcompany	2018	
동물보호법 판례평석 / 카라	카라	2018	
반려견 법률 상식 / 홍완식	마인드맵	2018	
法人稅: 2018 / 이연호	광교이텍스	2018	
부가가치세: 2018 / 한장석	광교이텍스	2018	
북한 경제와 법: 체제전환의 비교법적 분석 / 장소영	景仁文化社	2017	
비즈니스범죄와 기업법: 배임, 횡령, 회사범죄, 배임수증재, 독직죄, 청탁금지법, 자금세탁규 제 / 한석훈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8	
사회보장법과 의회 / 이신용	한올아카데미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사회복지법제론 / 김종업	탐북스	2018	
産業財産權 v.55 /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韓國産業財産權 法學會	2018	
세법개론: 2018 / 임상엽	상경사	2018	
세법개론강의 / 이종탁	광교이텍스	2018	
세법편람, 2018 / 조세신보사	조세신보사	2018	
양도소득세: 2018 / 안수남	광교이텍스	2018	
여신실무법률: 여신관리 / 송영호	한국금융연구원	2018	
외국환거래법규와 外換刑事法 / 김용태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18	
이나우스DB v.2018-5 / 조세통람사 이나우스정보	조세통람사	2018	
이나우스DB v.2018-6 / 조세통람사 이나우스정보	조세통람사	2018	
재개발·재건축: 전면개정된 도시정비법 해설을 중심으로 / 최근형	진원사	2018	
조문별·쟁점별 하도급법 / 법률연구회	법률정보센터	2018	
조문별·쟁점별 부정경쟁방지법 / 법률연구회	법률정보센터	2018	
租稅法研究 v.24-1 / 세법연구회	세경사	2018	
조세법의 쟁점. 3 / 태평양 조세팀	景仁文化社	2018	
조세불복청구: 조세불복이유서 작성요령과 실제사례 / 이승효	광교이텍스	2017	
조세실무연구. 9 / 김·장 법률사무소 조세쟁송팀	KIM&CHANG	2018	
중국 상표 심사 및 심리기준 / 商标局和商标评审委员会	세창출판사	2018	
중국 상표법 / 정덕배	북랩	2018	
중국 특허 실무 / 김도현	세창출판사	2018	
지방세법실무: 조문·판례·심결례·선례로 보는 / 박형기	법률&출판	2018	
책 도둑질은 고상한 범죄: 중국 문명과 지적재산권법의 역사 / Alford, William P	Lawbidge	2018	
특허법 2.0 / 조영선	박영사	2018	
하도급법 해설과 쟁점 / 정중채	삼일인포마인	2018	
하청노동론: 근로계약의 도급계약화 현상에 대한 법학적 분석 / 박제성	피플	2018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韓國土地投機史 / 정우형	피앤씨미디어	2018	
環境法研究 v.40-1 / 한국환경법학회	韓國環境法學會	2018	
年報知的財産法: [特集] 地理的表示の保護制度: 2017-2018 / 高林龍	日本評論社	2017	
Blockchain and the Law: The Rule of Code / De Filippi, Primavera	Harvard University Press	2018	
IP law journal v.4 / Patent Court of Korea	Patent Court of Korea	2017	
Patent court decisions v.3 / Patent court of korea	Patent court of korea	2017	

[국제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國際法學會論叢 v.63-1 / 대한국제법학회	大韓國際法學會	2018	
國際私法研究 v.23-2 / 한국국제사법학회	법영사	2017	
국제형사법과 절차 / 한국. 대법원 국제형사법연구회	사법발전재단	2018	
人權條約の解釈と適用 / 坂元茂樹	信山社	2017	
(A) Study of Rules Concerning the Transfer of Risks in Contract for International Sale of Goods: With An Emphasis on Differences Between the Thai and the Korean Laws / Pootragoon, Punyaporn	고려대학교	2017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quarterly v.67-2 / British Institute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British Institute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2018	
Law, Practice and Procedure of Arbitration / Sundra Rajoo, Datuk	LexisNexis	2017	
Zeitschrift für ausländisches öffentliches Recht und Völkerrecht v.78-1 / Bruns, Viktor, Bernhardt, Rudolf	W. Kohlhammer	2018	
Zeitschrift für Europäisches Privatrecht v.2018-1 / Basedow, Jürgen, Blaurock, Uwe, Kieninger, Eva Maria, Schulze, Reiner, Wagner, Gerhard, Zimmermann, Reinhard	C.H.Beck	2018	

[헌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기본강의) 헌법 / 김유향	월비스	2018	
(법률로 구성한) 헌법 / 오호택	동방문화사	2018	
(시민교과서) 헌법 / 조유진	현북스	2018	
(실무가를 위한) 헌법소송: 이론과 작성례 / 김광재	월비스	2017	
공직선거법 벌칙해설 / 대검찰청	대검찰청	2018	
독일 헌법학의 원천 / Schmitt, Carl 김효진	산지니	2018	
소수자를 위한 법과 논리 / 윤진숙	탑북스	2018	
통일법의 이해 / 이효원	박영사	2018	
헌법 전쟁: 권력 대 권리: 숨겨진 을의 권리를 찾아서 / 김영수	알렙	2018	
헌법소송법 / 이동흠	박영사	2018	
헌법소송법: Constitutional litigation / 김하열	박영사	2018	
헌법은 밥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시민들의 헌법 교과서 / 최진열	이담 Books	2018	
헌법의 이름으로: 헌법의 역사, 현실, 논리를 찾아서 / 양건	사계절	2018	
헌법재판과 위헌심사기준: 형벌법규 / 오영신	法文社	2018	
헌법주석. [국회, 정부] 제40조~제100조 / 한국헌법학회	경인문화사	2018	
헌법주석. [법원, 경제질서 등] 제101조~제130조 / 한국헌법학회	경인문화사	2018	
司法權: 憲法訴訟論, 上 / 君塚正臣	法律文化社	2018	
司法權: 憲法訴訟論, 下 / 君塚正臣	法律文化社	2018	
Bulletin on constitutional case-law v.2017-2 / European Commission for Democracy through Law Secretariat	Secretariat of the Venice Commission	2018	
Constitutional Documents of Switzerland from the late 18th Century to the second Half of the 19th Century. Part V: Geneva / Schweizer, Rainer J	De Gruyter	2017	
Handbuch der Grundrechte in Deutschland und Europa, Band X: Grundrechte in West-, Nord- und Südeuropasgrundrechte in Deutschland / Merten, Detlef	C.F. Müller	2018	
Public law v.2018-2 / Sweet & Maxwell Sweet and Maxwell	Sweet & Maxwell	2018	

[행정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2017년) 행정법 판례 / 최선웅	진원사	2018	
(新)행정법특강. [1] / 홍정선	박영사	2018	
(新)행정법특강. [2] / 홍정선	박영사	2018	
경찰법: 경찰법의 기본체계와 이론적 기초 / 손재영	박영사	2018	
독일 공법상 국가임무론과 보장국가론 / 박재운	景仁文化史	2018	
土地公法研究 v.82 / 한국토지공법학회	韓國土地公法學會	2018	
행정법 판례 강의: 2018 / 김유환	울곡출판사	2018	
行政判例研究 v.22-2-1 / 한국행정판례연구회	박영사	2017	
行政判例研究 v.22-2-2 / 한국행정판례연구회	박영사	2017	
현대 행정법의 이해. 故 淸江 류지태 선생 10주기 기념 / 故 류지태 교수 10주기 추모논문집 간행위원회	박영사	2018	
Administrative law review v.70-1 / American Bar Association	American Bar Association	2018	

[형법(형사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벌칙에 관련된 판례와 조항을 볼 수 있는 개정新판) 정식 형법법 실무정해: 형법. 1 / 김창범	법률미디어	2018	
(벌칙에 관련된 판례와 조항을 볼 수 있는 개정新판) 정식 형법법 실무정해: 형사특별법. 2 / 김창범	법률미디어	2018	
양형의 이론과 실제 / 이진국	피앤씨미디어	2018	
여성·청소년 범죄 수사 실무 총서 / 박태곤	법문북스	2018	
위험관리 수단으로서의 형법의 기능과 한계: 주의의무와 법인 책임을 중심으로 / 정유나	高麗大學教	2017	
청소년이 이해하기 쉬운 형법. 2 / 원혜욱	fides	2018	
被害者學研究 v.26-1 / 한국피해자학회	韓國被害者學會	2018	
刑事法研究 v.58 / 한국형사법학회	韓國刑事法學會	2014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刑事政策 v.30-1 / 한국형사정책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	2018	
호통판사 천중호의 변명 / 천중호	우리학교	2018	
終末期医療と刑法 / 甲斐克則	成文堂	2017	
刑罰制度改革の前に考えておくべきこと / 本庄武	日本評論社	2017	

[상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기업법실무강의: 기업인수합병 M&A / 정응기	충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18	
상법강의. (하) / 정찬형	박영사	2018	
중국 주식회사의 감사제도 / 창신연	동방문화사	2018	
진보 회사법 시론: 회사법의 경제민주주의적 해석 / 손창완	한울아카데미	2017	
회사법. I / 임재연	박영사	2018	
회사법. II / 임재연	박영사	2018	
회사소송 / 임재연	박영사	2018	
自動車保険実務の重要判例: 事例に学ぶ33のポイント / 丸山一朗	保険毎日新聞社	2017	
Aktiengesetz: Großkommentar, Bd. 3/2: §§ 67-75 / Hirte, Heribert Mülbert, Peter O Roth, Markus	De Gruyter	2018	
Kölner Kommentar zum Aktiengesetz, Bd. 4: 3. Teillieferung : §§192-201 AktG / Zöllner, Wolfgang	Carl Heymanns Verlag	2018	
Kölner Kommentar zum Aktiengesetz, Bd. 5: 4. Teillieferung : §§262-277 AktG / Zöllner, Wolfgang	Carl Heymanns	2017	
Lloyd's law reports: insurance & reinsurance v.2017-cit. / Lloyd's London of Press	Lloyd's of London Press	2018	
Lloyd's law reports: insurance & reinsurance v.2018-3 / Lloyd's London of Press	Lloyd's of London Press	2018	
Münchener Kommentar zum Versicherungsvertragsgesetz, Bd.3: Nebengesetze, systematische Darstellungen / Langheid, Theo	C.H.Beck	2017	
Zeitschrift für das gesamte Handelsrecht und Wirtschaftsrecht v.182-2 / Recht und Wirtschaft Heidelberg	Recht und Wirtschaft Heidelberg	2018	

[사법, 소송절차, 법무]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2014년도)파산부WORKSHOP자료집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법률실무를위한)보전소송·공탁실무 / 차경진	중앙법률사무교육원	2018	
(서울회생법원개원1주년기념도산법연구회, 한국도산법학회, 서울회생법원)합동세미나자료집:기업구조조정및회생절차의성과와발전방안모색 / 도산법연구회	서울회생법원	2018	
(한권으로끝내는)가사소송실무: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부양료청구 / 김동근	법률출판사	2018	
PatentcourtofKorea:Annualactivity.2017 / Patent court of Korea	Patent Court	2018	
개인회생파산실무와사례 / 한병호	중앙법률사무교육원	2018	
검사내전:생활형검사의사람공부, 세상공부 / 김웅	부키	2018	
도산법강의:BankruptcyLaw / 노영보	박영사	2018	
도산법연구 v.7-1 / 도산법연구회	도산법연구회	2017	
민사보전 / 권창영	韓國司法行政學會	2018	
民事執行法研究: 韓國民事執行法學會誌 v.14 / 한국민사집행법학회	韓國司法行政學會	2018	
법인·개인(회생·파산)판례요약집 / 법률연구회	법률정보센터	2018	
법인파산실무사례:사례·서식 / 김승현	법률정보센터	2018	
부동산경매의투자외합정 / 전장현	동방문화사	2018	
서울회생법원개원기념법관워크숍:소명과과제,그리고비전 / 서울회생법원	서울회생법원	2017	
회생사건:이론&실무 / 임정혁	법률출판사	2018	
東アジア家族法における当事者間の合意を考える: 歴史的背景から子の最善の利益をめざす家事調停まで / 稲田龍樹	勁草書房	2017	
Family court review: an interdisciplinary journal v.56-2 / Sage	Sage	2018	
INFORME DE GESTION: 2017 / CORTE SUPREMA DE JUSTICIA	CORTE SUPREMA DE JUSTICIA	2018	

[민사소송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소송의 길잡이 민사·형사) 소송 119 / 한병호	중앙법률사무교육원	2018	
(법률실무를 위한) 민사소송실무 / 한병호	중앙법률사무교육원	2018	
民事訴訟による集会的権利保護の立法と理論 / 三木浩一	有斐閣	2017	
Europäisches Zivilprozess- und Kollisionsrecht: Kommentar. Band III: Rom I-VO, Rom II-VO / Rauscher, Thomas	Otto Schmidt	2016	
Europäisches Zivilprozess- und Kollisionsrecht: Kommentar. Band V: KSÜ EU-ErbVO, HUntStProt 2007 Rom III-VO / Rauscher, Thomas	Otto Schmidt	2016	
Zeitschrift für Zivilprozess: ZZZ v.131-1 / Carl Heymanns Verlag	Carl Heymanns Verlag	2018	

[형사소송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국민참여재판에서의 증거법과 사실인정 / 이훈재	전북대학교출판문화원	2018	
범죄수사규칙 / 신현덕	법률미디어	2018	
시민 배심원제 그리고 양형기준: 박승옥 변호사가 말하는 사법개혁 쟁취의 길 / 박승옥	한울출판사	2018	
(Die) Strafprozessordnung und das Gerichtsverfassungsgesetz: Groß kommentar. Band 2: §§ 48-93 / Rosenberg, Löwe	De Gruyter	2018	

[민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2018년) 민법일부개정법률 [알기 쉬운 민법] 안에 관한 민법학자 의견서 / 한국민사법학회	유원북스	2018	
(등기에서 꼭 알아야 할) 부동산등기 실무의 핵심 / 전남주	탑북스	2018	
(이혼! 나홀로 해결하기) 복잡한 이혼문제 쉽게해결하기! / 김만기	법문북스	2018	
기본민법: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총론, 채권법각론 / 송덕수	박영사	2018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성년후견제도의 이론과 실무 / 김은효	진원사	2018	
유치권의 아킬레스건 / 이재석	푸른솔	2018	
중중 소송 메뉴얼 / 법률연구회	법률정보센터	2018	
친족상속법 강의 / 윤진수	박영사	2018	
(J. von) Staudingers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mit Einführungsgesetz und Nebengesetzen, AGG(Allgemeines Gleichbehandlungsgesetz) / Serr, Stephan	Sellier-de Gruyter	2018	
(J. von) Staudingers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mit Einführungsgesetz und Nebengesetzen, Buch 1 : Allgemeiner Teil §§134-138 ; ProstG (Gesetzliches Verbot, Verfügungsverbot, Sittenwidrigkeit) / Fischinger, Philipp S	Sellier-de Gruyter	2017	
(J. von) Staudingers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mit Einführungsgesetz und Nebengesetzen, Buch 1: Allgemeiner Teil §§125-129 ; BeurkG (Formvorschriften AT ; Beurkundung) / Hertel, Christian	Sellier-de Gruyter	2017	
(J. von) Staudingers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mit Einführungsgesetz und Nebengesetzen, Buch 1: Allgemeiner Teil §§80-89 (Stiftungsrecht) / Hüttemann, Rainer	Sellier-de Gruyter	2017	
(J. von) Staudingers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mit Einführungsgesetz und Nebengesetzen, Buch 2 : Recht der Schuldverhältnisse §§397-432 (Erlass, Abtretung, Schuldübernahme, Mehrheit von Schuldnern und Gläubigern) / Busche, Jan	Sellier-de Gruyter	2017	
(J. von) Staudingers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mit Einführungsgesetz und Nebengesetzen, Buch 2 : Recht der Schuldverhältnisse §§535-556g (Mietrecht 1 - Allgemeine Vorschriften ; Wohnraummiete) / Artz, Markus	Sellier-de Gruyter	2018	
(J. von) Staudingers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mit Einführungsgesetz und Nebengesetzen, Buch 2 : Recht der Schuldverhältnisse §§557-580a ; Anhang AGG (Mietrecht 2 - Miethöhe und Beendigung des Mietverhältnisses) / Artz, Markus	Sellier-de Gruyter	2018	
(J. von) Staudingers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mit Einführungsgesetz und Nebengesetzen, Buch 2: Recht der Schuldverhältnisse §§311, 311a-c(Vertragsschluss) / Feldmann, Cornelia	Sellier-de Gruyter	2018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J. von) Staudingers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mit Einführungsgesetz und Nebengesetzen. Buch 2: Recht der Schuldverhältnisse §§830-838 (Haftung Mehrerer Schädiger, Tierhalter-, Gebäudehaftung) / Bernau, Falk	Sellier-de Gruyter	2018	
(J. von) Staudingers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mit Einführungsgesetz und Nebengesetzen. Buch 2: Recht der Schuldverhältnisse Umwelthaftungsrecht-Grundlagen und Sondergesetze (UmweltHG, AtomG, BBergG, BImSchG, GenTG, HaftPflG, KSpG, WHG) / Kohler, Jürgen	Sellier-de Gruyter	2017	
(J. von) Staudingers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mit Einführungsgesetz und Nebengesetzen. Buch 4 : Familienrecht §§1601-1615n (Unterhaltspflicht) / Klinkhammer, Frank	Sellier-de Gruyter	2018	
(J. von) Staudingers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mit Einführungsgesetz und Nebengesetzen. Buch 4 : Familienrecht §§1896-1921 (Rechtliche Betreuung und Pflegschaft) / Bienwald, Werner	Sellier-de Gruyter	2017	
(J. von) Staudingers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mit Einführungsgesetz und Nebengesetzen. Buch 4: Familienrecht §§ 1363-1407 (Eheliches Güterrecht 1 - Gesetzliches Güterrecht) / Thiele, Burkhard	Sellier-de Gruyter	2017	
(J. von) Staudingers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mit Einführungsgesetz und Nebengesetzen. Buch 4: Familienrecht §§ 1408-1563 (Eheliches Güterrecht 2 - Gesetzliches Güterrecht) / Thiele, Burkhard	Sellier-de Gruyter	2018	
(J. von) Staudingers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mit Einführungsgesetz und Nebengesetzen. Buch 5 : Erbrecht §§2229-2264 (Errichtung und Aufhebung eines Testaments) / Baumann, Wolfgang	Sellier-de Gruyter	2018	
(J. von) Staudingers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mit Einführungsgesetz und Nebengesetzen. Gesetz über das Wohnungseigentum und das Dauerwohnrecht §§20-64 WEG (WEG 2 - Verwaltung ; WohnungserbbauR ; DauerwohnR ; VerfahrensR ; Ergänzende Bestimmungen) / Häublein, Martin	Sellier-de Gruyter	2018	
(J. von) Staudingers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mit Einführungsgesetz und Nebengesetzen. Wiener UN-Kaufrecht (CISG) / Magnus, Ulrich	Sellier-de Gruyter	2018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Bürgerliches Gesetzbuch: mit Einführungsgesetz und Nebengesetzen, Band 19/2: Familienrecht 3/2 (§ § 1616-1717) / Soergel, Hans Theodor	Verlag W. Kohlhammer	2017	
Schweizerischen Zivilgesetzbuch, [Bd. 8-1-2]: Das Obligationenrecht; Die Geschäftsfirmer, Art. 944-956 OR / Siffert, Rino	Stämpfli	2017	
Schweizerisches Zivilgesetzbuch, [Bd. 1-2-1]: Zivilgesetzbuch; Die natürlichen Personen, Art. 11-19d ZGB : Rechts- und Handlungsfähigkeit / Bucher, Eugen	Stämpfli	2017	
Schweizerisches Zivilgesetzbuch, [Bd. 2-2-3]: Zivilgesetzbuch: Die elterliche Sorge, der Kinderschutz, Art. 296-317 ZGB : das Kindesvermögen, Art. 318-327 ZGB : Minderjährige unter Vormundschaft, Art. 327a-327c ZGB / Affolter-Fringeli, Kurt	Stämpfli	2016	
Schweizerisches Zivilgesetzbuch, [Bd. 3-2-1-3]: Zivilgesetzbuch; die Teilung der Erbschaft, Art. 602 - 619 ZGB / Wolf, Stephan	Stämpfli	2014	
Schweizerisches Zivilgesetzbuch, [Bd. 4-3-1]: Zivilgesetzbuch; Der Besitz, Art. 919-941 ZGB / Stark, Emil W	Stämpfli	2016	
Schweizerisches Zivilgesetzbuch, [Bd. 6-1-7-3]: Das Obligationenrecht; Solidarität : Art. 143 - 150 OR / Kratz, Brigitta	Stämpfli	2015	
Schweizerisches Zivilgesetzbuch, [Bd. 6-2-1-7]: Das Obligationenrecht; Die Miete : Art. 256 - 259i OR : Art. 256-259i OR / Giger, Hans	Stämpfli	2015	
Schweizerisches Zivilgesetzbuch, [Bd. 6-2-2-2]: Das Obligationenrecht; Der Arbeitsvertrag, Art. 331 - 355 und Art. 361 - 362 OR / Reh binder, Manfred	Stämpfli	2014	
Schweizerisches Zivilgesetzbuch, [Bd. 8-3-2]: Das Obligationenrecht; das Aktienrecht: systematische Darstellung / Nobel, Peter	Stämpfli	2017	

• 일반도서

[총류]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한국기록관리학회지 v.18-2 / 한국기록관리학회	한국기록관리학회	2018	
한국문헌정보학회지 v.52-2 / 한국문헌정보학회	한국문헌정보학회	2018	

[사회과학]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연구보고서: 통계개발원 2017년 하반기. 제 I 권 / 통계청. 통계개발원	통계청 통계개발원	2018	
연구보고서: 통계개발원 2017년 하반기. 제 II 권 / 통계청. 통계개발원	통계청 통계개발원	2018	
연구보고서: 통계개발원 2017년 하반기. 제 III 권 / 통계청. 통계개발원	통계청 통계개발원	2018	
연구보고서: 통계개발원 2017년 하반기. 제 IV 권 / 통계청. 통계개발원	통계청 통계개발원	2018	
연구보고서: 통계개발원 2017년 하반기. 제 V 권 / 통계청. 통계개발원	통계청 통계개발원	2018	
연구보고서: 통계개발원 2017년 하반기. 제 VI 권 / 통계청. 통계개발원	통계청 통계개발원	2018	
家族のための総合政策. IV: 家族内の虐待・暴力と貧困 / 本澤巳代子	信山社	2017	

• 정기간행물 목록

[국내서 정기간행물 구입목록]

No	서명	발 간 처	간기
1	주간조선No.2509,2510	조선일보사	주간
2	이코노미스트 No.1436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3	考試界 63권 6호 (통권 736호)	국가고시학회	월간
4	Legal Times Vol.119 (2018. 6)	(주)리걸타임즈	월간
5	現代文學 2018년 6월	현대문학사	월간
6	시사저널No.1493,1494	(주)독립신문사	주간
7	노동법률 통권 325호 (2018. 6)	中央經濟社	월간
8	종합물가정보통권571호I,II호+부록(2018년6월)	한국물가정보	월간
9	이코노미스트	이코노미스트 No.1435	주간
10	문학사상	문학사상 2018년 6월	월간
11	産業財産權 第54號 55號 (2007)	韓國産業財産權法學會	연3회
12	刑事政策30권1호 (2018. 4)	한국형사정책학회	반년간
13	월간조선 2018년6월	조선일보사	월간
14	주간조선 No.2508	조선일보사	주간
15	시사저널 No.1492	(주)독립신문사	주간
16	신동아 2018년 6월	동아일보사	월간
17	주간조선 No.2507	조선일보사	주간
18	이코노미스트 No.1433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19	이코노미스트 No.1434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20	시사저널 No.1491	(주)독립신문사	주간
21	월간중앙 2018년 6월	중앙일보사	월간
22	거래가격 통권 569호 (2018. 6)	대한건설협회	월간

No	서명	발 간 처	간기
23	國際私法研究 제23권 제2호	韓國國際私法學會	반년간
24	國際法學會論叢 63卷 1號 (通卷 148號)	大韓國國際法學會	부정간
25	法史學研究 57號 (2018. 4)	韓國法史學會	반년간
26	環境法研究 제40권 제1호	韓國環境法學會	연3회
27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52권 2호 (2018. 5)	한국문헌정보학회	계간
28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8권 2호 (2018. 7)	한국기록관리학회	반년간
29	출판저널 Vol.505 (2018. 4)	출판저널	월간
30	司法行政 59권 6호 (통권 690호)	韓國司法行政學會	월간
31	주간조선 No.2511, 2512	조선일보사	주간
32	이코노미스트 No.1437, 1438, 1439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33	시사저널 No.1495, 1496	(주)독립신문사	주간
34	LAW & TECHNOLOGY 제14권 제3호 (2018. 5)	서울대학교기술과법센터	격월간
35	신동아 2018년 7월	동아일보사	월간
36	월간중앙 2018년 7월	중앙일보사	월간
37	월간조선 2018년 7월	조선일보사	월간
38	거래가격 통권 570호 (2018. 7)	대한건설협회	월간
39	이나우스DB 2018년 6월	영화조세통람사	월간
40	土地公法研究 82輯	韓國土地公法學會	계간
41	被害者學研究 제26권 1호 (2018. 4)	韓國被害者學會	반년간

[일서 정기간행물 구입목록]

No	서명	발간처	간기
1	(旬刊)商事法務 (별책) 商事法務 432호	商事法務研究會	부정기
2	(旬刊)商事法務 (별책) 商事法務 433호	商事法務研究會	부정기
3	租稅研究 第823號 (2018.5)	日本租稅研究協會	월간
4	勞動判例 No.1174, 1175	産勞總合研究所	반월간
5	法曹時報 70卷 4號, 70卷 5號	法曹會	월간
6	金融法務事情 2088號, 2089號	金融財政事情研究會	순간
7	勞動法律旬報 1910號, 1911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8	判例時報 2362號, 2363號, 2364號	判例時報社	순간
9	コピーライト Vol.58 No.685	著作権情報センター	월간
10	法學 82卷 1號	東北帝國大學法學會	격월간
11	法學協會雜誌 135卷 4號	東京大學法學協會	월간
12	法律のひろば 71卷 5號	ぎょうせい	월간
13	(月刊)登記情報 58卷 5號 (678號)	テイハン	월간
14	自治研究 94卷 5號 (通卷 1131號)	第一法規	월간
15	NBL 1121, 1122	商事法務	반월간
16	法學教室 452號 (2018. 5)	有斐閣	월간
17	發明 115卷 5號 (2018. 5)	發明協會	반월간
18	金融·商事判例 No.1540, 1541	經濟法令研究會	반월간
19	國際商事法務 46卷 5號 (通卷 671號)	國際商事法務研究所	월간
20	パテント 71卷 5號 (通卷 833號)	日本弁理士會	월간
21	(旬刊)商事法務 2164號, 2165號, 2166號	商事法務研究會	순간
22	判例地方自治 432號 (2018. 6)	ぎょうせい	월간
23	銀行法務 21 62卷 6號 (828號)	經濟法令研究會	월간

No	서명	발간처	간기
24	登記研究 842號 (2018. 6)	テイハン	월간
25	戶籍 953號	テイハン	월간
26	海事法研究會誌 239號 (2018. 5)	日本海運集會所	격월간
27	文藝春秋 2018年 6月號	文藝春秋	월간
28	法學セミナー 63卷 6號 (通卷 761號)	日本評論社	월간
29	ジュリスト 1519號	有斐閣	격주간
30	判例時報 2361號	判例時報社	순간
31	NBL 1120號	商事法務	반월간
32	法律時報 90卷 5號 (通卷 1124號)	日本評論社	월간
33	判例タイムズ 1446號	判例タイムズ社	월간

[양서 정기간행물 구입목록]

No	서명	발간처	간기
1	Actualidad Juridica aranzadi No.940	Thomson Reuters	격주간
2	Bundesgesetzblatt Teil I Nr.15 (2018)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3	Bundesgesetzblatt TeilIII Nr.6, 7, 8 (2018)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4	Karlsruher Juristische Bibliographie 2018. Heft.2	C.H.Beck	월간
5	The Economist 2018. 5.19 / 5.26	The Economist Group	주간
6	Time 2018년 5월 21일 / 2018년 5월28일	Time Asia	주간
7	BNA's Patents, Trademark & Copyright Journal Vol.95 No.2357	BNA	주간
8	BNA's Patents, Trademark & Copyright Journal Vol.96 No.2358, 2360	BNA	주간
9	Hochstrichterliche Finanzrechtsprechung 2018. Nr.5	Stollfuss	월간

No	서명	발간처	간기
10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5 no.16, 18	BNA	주간
11	Der Spiegel 2018, Nr.14, Nr16	Spiegel	주간
12	Der Spiegel 2018, Nr.20, Nr21	Spiegel	주간
13	ABA(American Bar Association) journal Vol.103 (2018.5.)	American Bar Association	월간
14	Versicherungsrecht Jahrg.69 Hft.1, 2, 3, 4, 5, 6, 7, 8, 9	Verlag Versicherungswirtschaft	순간
15	Archiv für Kriminologie; Unter Besonderer Beruecksichtigung Bd.241 Hft.1-2, Hft.3-4	Max Schmidt-Romhild KG	격월간
16	Zeitschrift für Wirtschaftsrecht Jahrg.39 Hft.19 + Ewir9, Hft.20	RWS	주간
17	Neue Zeitschrift für Verwaltungsrecht Jahrgang.37 Heft.10	C. H. Beck	월간
18	GWR(Gesellschafts- und Wirtschaftsrecht) Jahrgang.10 Heft.9	Verlag C. H. Beck OHG	반월간
19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72 Nr.19, 20	WM Wirtschafts- und Bankrecht	주간
20	BB(Betriebs-Berater) Jahrg.73 Nr.20, 20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	주간
21	Familie und Recht Jahrg.29 Hft.5	Wolters Kluwer Deutschland GmbH	월간
22	Die Aktiengesellschaft, Zeitschrift für das gesamte Aktienwesen Jahrg.63 Hft.10	Verlag Dr.Otto Schmidt Köln	격주간
23	Zeitschrift für Vergleichende Rechts-wissenschaft(ZvglRWiss) Bd.117 Hft.2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	계간
24	NZG(Neue Zeitschrift für Gesellschaftsrecht) Jahrgang.21 Heft.14	Verlag C. H. Beck OHG	순간
25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8, Heft.20	C. H. Beck	주간
26	Monatsschrift für Deutsches Recht Jahrg.72 Hft.10	Otto Schmidt	반월간
27	CCZ(Corporate Compliance Zeitschrift) Jahrgang.11 Heft.3	Verlag C. H. Beck OHG	격월간
28	EuZW(Europäische Zeitschrift für Wirtschaftsrecht) Jahrgang.29 Heft.9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29	Neue Zeitschrift für Arbeitsrecht(NZA) Jahrg.35 Hft.9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30	DVBL(Deutsches Verwaltungsblatt) Jahrg.133 Hft.10	Carl Heymanns	반월간

No	서명	발간처	간기
31	Juristen Zeitung Jahrg.73, Hft.10	J. C. B. Mohr	반월간
32	StV(Strafverteidiger) Jahrgang.38 Heft.6	Luchterhand	월간
33	Computer und Recht 2018. heft.5	Otto Schmidt	월간
34	Verfassung und Recht in Übersee(VRü) Jahrg.50 Hft.4	Nomos	계간
35	Rabels Zeitschrift für ausländis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recht band.82 heft.1, 2	J. C. B. Mohr	계간
36	Zeitschrift für die gesamte Strafrechtswissenschaft Band.129 Heft.4	Walter de Gruyter	계간
37	Archivfürdiecivilistische Praxis Bd.218 Hft.1	J. C. B. Mohr	격월간
38	Archiv des öffentlichen Rechts Band.143 Heft.1	J. C. B. Mohr	계간
39	Lloyd'slawreports 2018, Part.4	Lloyd's of London	연10회
40	The Modern Law Review Vol.81 No.1	Mordern Law Review Limited	격월간
41	Stanford Law Review Vol.70 No.4	Stanford Law School	격월간
42	Zeitschrift für die gesamte Strafrechtswissenschaft Band.130 Heft.1	Walter de Gruyter	계간
43	Zeup(Zeitschrift für Europaeisches Privatrecht) 2 / 2018	Verlag C. H. Beck OHG	계간
44	Juristen Zeitung Jahrg.73, Hft.1, 2, 3, 4, 5, 6, 7, 8, 9	J. C. B. Mohr	반월간
45	Zeitschrift für Wirtschaftsrecht Jahrg.39 Hft.16, 17, Hft.18 + Ewir 8	RWS	주간
46	Jura: Juristische Ausbildung Bd.40 Hft.1, 2, 3, 5	Walter de Gruyter GmbH & Co, KG	월간
47	Recht der Arbeit Jahrgang.71 Heft.2	Verlag C. H. Beck OHG	격월간
48	Transportrecht Jahrgang.41 Heft.4	Luchterhand	월간
49	Neue Zeitschrift für Verwaltungsrecht Jahrgang.37 Heft.9	C. H. Beck	월간
50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72 Nr.17, 18	WM Wirtschafts-und Bankrecht	주간
51	BB(Betriebs-Berater)Jahrg.73 Nr.18, 19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	주간
52	Die Aktiengesellschaft, Zeitschrift für das gesamte Aktienwesen Jahrg.63 Hft.9	Verlag Dr.Otto Schmidt Köln	격주간

No	서명	발간처	간기
53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8, Heft,19+Spezial,9	C. H. Beck	주간
54	NZG(Neue Zeitschrift für Gesellschaftsrecht) Jahrgang,21 Heft,13	Verlag C. H. Beck OHG	순간
55	Monatsschrift für Deutsches Recht Jahrg.72 Hft,9	Otto Schmidt	반월간
56	Deutsche Richter Zeitung Jahrg.96 Nr.5	Carl Heymanns	월간
57	NJNeueJustiz Jahrg.72 Nr.5	Nomos	월간
58	WuW(Wirtschaft und Wettbewerb) Jahrg.68 Hft,5	Fachverlag der VHB GmbH	월간
59	Juristische Rundschau 2018 heft,5	Walter de Gruyter	월간
60	DVBL(Deutsches Verwaltungsblatt) Jahrg.133 Hft,9	Carl Heymanns	반월간
61	Die Öffentliche Verwaltung Jahrg.71 Heft9	Kohlhammer	반월간
62	Bundesgesetzblatt Teil II Nr.9 (2018)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간
63	Bundesgesetzblatt Teil I Nr.16, 17, 18 (2018)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간
64	Die Praxis 2018, Heft,1, 2	Helbing & Lichtenhahn	월간
65	The Economist 2018. 6.2. / 6.9 / 6.16	The Economist Group	주간
66	Patent, Trademark & Copyright Journal Vol.96 No.2359, 2361, 2362	BNA	주간
67	Time 2018년 6월 4일	Time Asia	주간
68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5 no.21, 22	BNA	주간
69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5 no.19, 20	BNA	주간
70	Der Spiegel 2018, Nr.22, 23	Spiegel	주간
71	ABA(American Bar Association) journal Vol.103 (2018. 6)	American Bar Association	월간
72	Zeitschrift für Wirtschaftsrecht Jahrg.39 Hft,22	RWS	주간
73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72 Nr.21, 22	WM Wirtschafts-und Bankrecht	주간
74	GWR(Gesellschafts-und Wirtschaftsrecht) Jahrgang,10 Heft,10	Verlag C. H. Beck OHG	반월간
75	BB(Betriebs-Berater) Jahrg.73 Nr.23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	주간

No	서명	발간처	간기
76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8, Heft,21, 22	C. H. Beck	주간
77	NZG(Neue Zeitschrift fur Gesellschaftsrecht) Jahrgang.21 Heft.15	Verlag C. H. Beck OHG	순간
78	Die Öffentliche Verwaltung Jahrg.71 Heft10, 11	Kohlhammer	반월간
79	Monatsschriftfur Deutsches Recht Jahrg.72 Hft.11	Otto Schmidt	반월간
80	WuW(Wirtschaft und Wettbewerb) Jahrg.68 Hft.6	Fachverlag der VHB GmbH	월간
81	EuZW(Europäische Zeitschrift fur Wirtschaftsrecht) Jahrgang.29 Heft.10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82	Neue Zeitschrift fur Arbeitsrecht(NZA) Jahrg.35 Hft.10	Verlag C. H. Beck OHG	계간
83	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Part.2 (2018, 5)	LLP	계간
84	(The)Cambridgelawjournal Vol.77 Part.1	The Cambrigde University	계간
85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 Vol.51 No.3 (2018 Spring)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	계간
86	Journal of East Asia and International Law Vol.11 No.1 (2018, Spring)	YIJUN INSTITUTE OF INTERNATIONAL LAW	계간
87	Recueil Dalloz 2017, N.23	Dalloz	주간
88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ère 2017, N.21	Juris-Classeur	주간
89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7, N.41	Juris-Classeur	주간
90	Zeitschrift für Europarecht, Internationales Privatrecht und Rechtsvergleichung Jahrgang.59 Heft.2	Manz	격월간
91	Journal of World Trade Vol.52 No.2	Kluwer Law International	격월간
92	Ö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73 Heft.9	Manz	반월간
93	Entertainment law review vol.29 issue.4	Sweet & Maxwell	연8회
94	Neue Zeitschriftfur Strafrecht Jahrgang.38 Heft.5	C. H. Beck	월간

